

# 중소기업 기술유출 대응매뉴얼

- 기술유출방지 관련 법제 및 보안서식 자료집 -

2007. 12

연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본 보고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 < 목 차 >

<b>제 1 장 국내 기술유출방지 관련 법제</b> .....	<b>1</b>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3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1
3. 조세특례제한법 .....	24
4.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	25
5.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	54
6.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지침 .....	59
<b>제 2 장 해외 기술유출방지 관련 법제</b> .....	<b>65</b>
1. 국제협정 .....	67
2. 미국 .....	69
3. 중국 .....	71
4. 일본 .....	73
<b>제 3 장 보안서류 양식 예시</b> .....	<b>75</b>
1. 보안관리규정 .....	77
2. 보안서약서(국문, 영문, 중문, 일문) .....	82
(1) 입사자/채직자용 .....	82
(2) 외국인용 .....	90
(3) 퇴직자용 .....	98
(4) 협력업체-기업용 .....	106
(5) 협력업체-개인용 .....	114
(6) 프로젝트 참여자용 .....	122
(7) NOTE PC 사용자용 .....	130
(8) 전산매체등 사용자용 .....	138

3. 기술계약서 .....	146
(1) 공동연구계약서 .....	146
(2) 투자유치계약서 .....	152
(3) 라이선스계약서 .....	155
(4) 제조위탁계약서 .....	161
(5) 인수합병계약서 .....	164
(6) 합작투자계약서 .....	167
4. 직무발명보상규정 .....	176
5.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세칙 .....	192
6. 경고장·회신문 .....	198
(1) 경고장 .....	198
(2) 회신문 .....	201
7. 국가핵심기술 신청 및 신고서류 .....	204
(1)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	204
(2)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	206
(3)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	207

## 제 1 장 국내 기술유출방지 관련 법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289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이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사.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의 체결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전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기망·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

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라 함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제3조(국기·국장 등의 사용금지) 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결국의 국기·국장 기타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당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결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당해국의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그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 말소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5조(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단, 제2조 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한한다.

제6조(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 제2조 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한한다.



제7조(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은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특허청장은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특허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라 함은 제2조 제3호 다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14조(시효)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장 보 칙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②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③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자기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단,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 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형법중 국가·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 제1호 라목 내지 바목,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

#### 제16조 삭제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특허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벌칙) ①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 제1호(아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가·국장 기타의 휘장
  - 나. 국제기구의 표지
  -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정부의 감독·증명용 표지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⑤ 삭제

제18조의2(미수)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8조의3(예비·음모) ① 제18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8조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 각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 제20조(과태료) 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7095호, 2004. 1. 20>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 200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 ⑦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 ⑧ 내지 <16>생략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06.10.27 법률 제8062호], 시행일 2007.4.28.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나.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다.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과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업·연구기관 및 대학 등 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에 관련된 모든 기관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부당한 처우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산업기술 및 지식의 확산과 활용이 제약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각자의 직업윤리의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의 수립·추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가공과 보급에 관한 사항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정·수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사항
  6. 대상기관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된다.
- ⑤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관리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산업자원부 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하고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 장관은 산업기술의 발전추세 및 국내외 시장환경 등을 감안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지침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자원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통보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지정대상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 등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 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국가핵심기술이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의 전략기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국가 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심의

3.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미승인 또는 부정승인 및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심의

⑨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 제1항의 승인, 제4항의 신고, 제5항 및 제7항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권고 및 개선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산업기술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 또는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추진하는 행위

6. 제11조 제5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①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장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① 대상기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기술

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2.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관련 정보 전파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홍보·교육·실태조사
  4.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발간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6.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거나 협회의 정관이 정한 사업
- ⑤ 정부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보안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산업보안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의 국제적 차원의 조사·연구
  2.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인력·정보의 교류
  3.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전시회·학술회의 등의 개최

4. 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9조(산업기술보호교육)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기간·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① 정부는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① 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신변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정착 및 국적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포상금 지급, 신변보호 등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대상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대상기관 등에 대하여 산업기술보호설비구축 등에 필요한 기술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보 칙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①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기술 또는 정보의 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산업기술유출의 방지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산업기술의 보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산업기술의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임원직에 있는 자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4조(조정부) ① 분쟁의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부 분쟁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에 일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6조(분쟁의 조정) ①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자료요청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요구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진술을 청취할 경우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조정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해당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9조(조정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조정절차 등)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준용법률) 산업기술유출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수수료) 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징수방법·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소속기관의 장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승인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승인을 검토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제6장 벌 칙

제36조(벌칙) 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⑤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7조(예비·음모) ① 제36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제8062호, 2006. 10.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 기업의 물리적·기술적 보안설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자,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0호)

**<표1-1> 기술유출방지설비**

구 분	적 용 범 위
1. 물리적 보안장비	스마트카드시스템, 스피드게이트, 무인방범시스템, 생체인식시스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X-Ray 검색시스템, 금속탐지기
2. 정보보호 시스템	가. 암호화 및 인증제품 - 공개키기반구조(PKI) 적용제품 - 무선공개키기반구조(WPKI) 적용제품 - 통합권한관리시스템(EAM) - 싱글사인온(Single Sign On) - 통합계정관리시스템(IM 또는 IAM)  나. 네트워크 보안제품 -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침입탐지시스템(IDS) - 침입방지시스템(IPS), 가상사설망(VAN) - 통합보안관리제품(ESM), 망전환장치 - 로그관리·분석제품, 취약성분석제품  다. 시스템 보안제품 - 바이러스 백신제품, 운영체제 보안시스템 - 데이터베이스·문서보안제품 - 저작권관리제품(DRM) - 스팸차단·전자메일 보안제품 - 유해정보차단제품, 웹보안제품

주)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동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함

##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대외무역법」 제21조의8과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4차 개정 2007. 04. 12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 - 3호  
2007. 04. 12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51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법령) ① 이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는 「대외무역법」 제21조의8과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과 국가안보를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무역법」 및 같은법 시행령
2. 「기술개발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3. 「원자력법」
4. 「방위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5.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략물자”라 함은 별표2에서부터 별표7에 해당하는 물품(물질, 시설과 장비 및 부품포함),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말한다.
2. “전략기술”이라 함은 당해기술의 이용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술로서 전략물자의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에 사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3. “중개”라 함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전략물자의 이전을 위하여 수수료 또는 기타 대가(代價)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기타 거래(무상 이전 포함)에 관한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분할선적”이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허가를 받은 전략물자를 허가 유효기간 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입목적확인서”라 함은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기술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기술을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 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6. “통관증명서”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한 전략물자가 당초 예정된 목적지로 도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또는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정부로부터 확인 받은 서류를 말한다.

7. “최종수하인”이라 함은 전략물자·기술을 최종적으로 인수받거나 구매하는 자 를 말한다.

8. “최종사용자”라 함은 전략물자·기술을 실제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9. “재수출”이라 함은 수입한 전략물자를 원형대로 수출하는 것과 부품 또는 부 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불문한 다)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2호에 따른 전략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수출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 고시의 본문, 별표, 별지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허가”는 “승 인”으로 본다.

제3조(허가의 유형) ① 이 고시에 따른 허가는 수출허가, 중개허가 및 상황허가로 구분한다.

② 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로 구분한다.

③ 포괄수출허가는 일반포괄수출허가, 특정포괄수출허가 및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 로 구분한다.

제4조(허가기관) ① 별표2부터 별표7까지 해당하는 전략물자·기술의 허가기관은 다 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8(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다.

1. 산업자원부장관 : 별표2(바세나르체제 관련품목의 규격 및 성능)의 제1부(일반 산업용 물자), 별표2의 제2부(군용물자) 중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른 일반방산물자, 별표3(원자력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의 제2부 (원자력 관련 일반산업용 물자) 및 별표4(미사일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 별표5(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 별표 6(화학무기금 지협약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 별표 7(생물무기금지협약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에 해당되는 품목

2. 과학기술부장관 : 별표 3의 제1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품목

3. 방위사업청장 : 별표 2의 제2부(군용물자) 중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2 항에 따른 주요방산물자, 별표 2의 제1부 및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에 해당되는 품 목 중 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품목 중 전략기술만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그 기술이 군사무기 및 방산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제3조 제1항의 상황허가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한다. 단,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설계, 제조 또는 사용 등을 위한 기술과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상의 제28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과학기술부장관이 한다.
- ④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물품과 함께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표8(허가 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에 대한 허가기관의 장이, 물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기술과 함께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표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허가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 ⑤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방산물자(군사무기 포함) 및 국방과학기술은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사전판정기관) ① 전략물자·기술의 사전판정기관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과 같다. 단, 산업자원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전판정업무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 제15항 제1호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이 수행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전판정업무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제1부(원자력 전용품목)와 별표 3의 제2부(원자력 관련 일반산업용 물자)에 해당되는 전략기술에 대한 사전판정업무는 과학기술부장관이 한다.
- ③ 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자문단 등 전문기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인으로부터 판정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과 같다.

## 제2장 전략물자·기술 해당여부의 확인 및 판정 등

제7조(전략물자·기술 해당여부의 확인) ①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는 「대외무역법」 제21조의2에 따라 제조한 품목이나 거래하고자 하는 품목이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같은 법 시행령 별

표1에 따른 '전략물자 확인의무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방법은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 또는 사전판정기관에 의뢰하는 사전판정으로 구분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 해당여부 확인은 사전판정기관에 의뢰하는 판정에 한한다.

제8조(자가판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자가판정은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 스스로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준하여 별표2부터 별표7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사전판정의 신청)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전판정을 신청하고자하는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서(전략기술인 경우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 사전판정신청서) 2부(신청자용, 사전판정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사전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전판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1.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각 3부
- 2. 별지 제5호 또는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1부
- 3. 그밖에 사전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사전판정의 처리) ① 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사전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품목의 전략물자·기술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단,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별지 제4호 또는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판정의 효력) 제10조에 따른 전략물자·기술 사전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단, 별표2부터 별표7까지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 1. 전략물자 : 판정일로부터 2년
- 2. 전략기술 : 판정일로부터 1년

제12조(통제품목에 대한 의견제출) ① 별표2부터 별표7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의 기준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범위에 속하는 통제품목의 기준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자문단 등 전문기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표2부터 별표7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3장 전략물자의 신고 및 통보

제13조(전략물자의 신고) 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물자로 확인된 품목의 제조자 및 수입자는 당해 전략물자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해당 품목의 명칭, 규격, 용도, 제조자 및 주요판매처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조자 : 출고일부터 30일 이내
2. 수입자 : 「관세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고시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입자가 제45조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 「화학·생물무기금지법」 제5조의2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조신고 후 제조신고필증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3. 제70조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입 또는 유통 통제 등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 신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14조(전략물자의 거래시 통보) 제13조 제1항의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전략물자를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품목이 전략물자라는 사실과 해당 품목의 통제번호, 명칭, 규격 및 용도 등의 내용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전략물자를 동일한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2. 해당 전략물자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당해 전략물자를 다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 시 그 물품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 제4장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

## 제1절 수출허가 총칙

제15조(수출허가의 일반원칙) ① 별표2부터 별표7까지에 해당하는 전략물자·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별표4(미사일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에 해당되는 전략물자·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은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체계(유인항공기 제외)개발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 별표6(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에 해당되는 전략물자·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은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1. 공업·농업·의료·제약·연구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2.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3.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서 화학물질의 독성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4. 폭동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목적

제16조(수출허가의 지침) ① 허가기관의 장이 별표3(원자력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의 제1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의 수출 및 재수출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침을 따르되, 수출시에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적용하며, 재수출시에는 모든 국가에 적용한다. 단, 수출의 경우, 양국 간 원자력협력 협정이나 그 밖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이 조항과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모든 통제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핵무기 또는 그 밖의 핵폭발장치 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하에서 허가한다.

2. 원자력 전용품목으로 규정된 모든 전략물자·기술의 불법사용,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은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조치하에 있어야 하며, 별표 18과 같은 방호수준을 수입국과 합의·조치하여야 한다.

3. 해당 통제품목의 수송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부간 특별약정을 각각 체결하여야 하며 운반, 포장기준 등은 「원자력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따른다.

4. 해당 통제품목의 수출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이행 중인 국가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수출하고자 할 때에

는 실질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가 적용되고 있거나 그 수출이 현존시설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통제품목을 수입국이 재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증하에서 수출을 허가한다.

6. 농축시설과 농축기술, 재처리 및 증수시설과 기술의 수출은 엄격히 제한한다.

7. 제15조의 수출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16의 「원자력전용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별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허가기관의 장이 별표3의 제2부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원자력관련 일반산업용 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핵무기 비보유국이 수출허가 신청품목을 핵폭발 활동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연료 주기활동에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한다.

2. 수출허가 신청품목의 최종 사용용도와 사용 장소가 표시되고, 제1호에 규정된 활동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최종사용자서약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수출허가 신청품목(장비, 물질, 관련기술 또는 복제품 등)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원자력 관련 비확산체제의 회원국이 아닌 지역으로 재수출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제15조의 수출허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침외의 사항은 별표17의 「원자력관련 일반산업용물자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존중하며 다른 국가들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한다.

③ 허가기관의 장이 별표4(미사일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에 해당되는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허가기관의 장은 별표4에 해당되는 품목1 및 품목2를 수출 또는 재수출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19 「미사일 및 관련 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제3항 E호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보증을 포함하는 정부간 약속을 교환하여야 한다.

2. 허가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품목의 수출 또는 재수출이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국 정부로부터 별표19의 수출지침에서 정한 적절한 보증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3. 허가기관의 장은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의 수출허가 기준을 심사하되 그 밖의 고려사항은 별표19의 「미사일 및 관련 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4. 이 지침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④ 허가기관의 장이 별표5(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에 해당되는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국의 관련 산업여건 및 수입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목적으로의 사용이 인정되고 재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수입국 정부의 보증하에 허가한다. 단, 제4조에 따른 수출허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수입자의 서약으로 수입국 정부의 보증을 갈음한다.

2. 제15조 제1항의 수출허가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20의 「민간 생·화학품목 이전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⑤ 허가기관의 장이 별표6(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에 해당되는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에 대하여 연구·의료·제약 또는 보호적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수출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한다.

2. 수입국의 관련 산업여건 및 수입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5조 제3항의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3. 2중 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할 수 없다.

4. 3중 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재수출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관계부처와의 협의) ①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기술의 허가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전략기술의 수출에 대하여 허가하고자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별표3의 제1부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원자력 전용품목)의 수출 허가 시 군사용으로 전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일반산업용 목적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허가기관의 장은 별표5(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미생물 및 관련시설 또는 전략기술에 대한 수출허가시 농림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략물자가 기술과 함께 수출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허가시 군사적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2절 개별수출허가

제18조(개별수출허가) “개별수출허가”라 함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기술의 개별 수출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여 허가 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허가지역의 구분)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9(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와 같다.

1. 가 지역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9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모두 가입한 국가
2. 나 지역 : 제1호 이외의 국가

제20조(수출허가 신청서류) ① 전략물자·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신청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5호 또는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3.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1부
4.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기술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5.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6.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최종사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종사용자의 수만큼 제출)
7. 그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2. 기술수출계약서안(국·영문) 3부
3.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수출승인 신청내용 명세서 각 3부
4.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 특성명세서 1부

③ 별표3에 열거된 전략물자 중 핵연료 또는 원료물질, 중수소 또는 중수소 혼합물, 인조 흑연, 니켈분, 베릴늄, 붕소, 핵연료물질 제조용의 환원제 또는 산화제, 하프늄 또는 하프늄화합물, 리튬 또는 리튬화합물, 텅스텐 또는 텅스텐합금, 질코늄 또는 질코늄 합금, 트리튬 또는 트리튬혼합물과 화합물, 헬륨 3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에 공인시험기관 또는 연구기관(「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성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수출허가 신청서류의 일부 면제 등) 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8(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을 별표9(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 “가”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②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사전판정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품목의 수출을 위한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단, 수출자는 이 경우 이미 제출한 판정신청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판정발급번호를 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을 한 수출건의 수입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 제4호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④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3의 제1부에 열거한 전략물자·기술을 핵공급국그룹(NSG)의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⑤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위한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제20조 제1항 제4호의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 진술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기관이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인 경우(단, 별표9의 “나”지에 해당되는 국가의 정부가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인 경우 제외)

2. 외국에서 수리 또는 재생한 후 재반입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3.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되 재반입 조건인 경우

4. 선박 또는 항공회사가 외국의 지사에 자사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리용 부품 및 부분품을 수출하는 경우

5. 그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5항은 전략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전략기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략물자를 반출한 자는 해당 품목의 재반입 사실을 소관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①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1. 전략물자·기술 해당 여부
2. 수입국가
3.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술수준과 군사·외교적 민감성
4.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5. 수입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자가 서약한 사용용도의 신뢰성
6. 제3국으로 재수출 될 가능성
7. 수출자, 수입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기술 거래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 별표3(원자력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에 해당하는 전략물자·기술에 대한 수출자의 수출허가 심사 시에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입국이 핵비확산조약 또는 라틴아메리카조약 당사국 여부 및 "IAEA" 안전조치의 협정 발효 여부
2. 수입국이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이 아니며 중수생산공장 또는 재처리 농축공장 등의 시설을 가동·설계·건설하고 있는지 여부
3. 수출하려는 장비, 물질 및 관련기술이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의 연구개발, 설계, 제조, 건설, 운전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되려는 것인지 여부
4. 수입국 정부의 조치, 성명, 정책의 핵 비확산 지지여부 및 비확산분야에서 국제적 의무의 이행 여부
5. 수입국의 비밀 또는 불법적인 조달활동에의 관련 여부

③ 별표4(미사일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에 해당되는 전략물자·기술에 대한 수출자의 수출허가 심사 시에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품목의 수출이 대량파괴무기의 국제적 확산에 미칠 영향
2. 해당 품목의 수입국이 수행하고 있는 우주개발 및 미사일개발 계획의 목적과 능력 수준
3. 해당 품목의 수입국의 잠재적인 대량파괴무기 운반수단(유인항공기 제외) 개발 가능성
4. 제1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증된 해당 품목의 수입국 정부의 각서에 기술된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최종사용목적에 관한 평가
5. 해당 품목의 수입국의 수입이 기존 국제적 협정에 적합한 지 여부

④ 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 제5호의 수출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출허가신청자로부터 수출 후 일정한 기간내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것과 수출된

전략물자·기술의 제3국 유출 등이 우려될 경우 국내로 환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고서 수출허가를 할 수 있다.

제23조(수출허가의 처리) ① 전략물자·기술 수출자의 수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단, 제21조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5일 이내)에 허가번호가 기재된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거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의 기술심사
2. 해당 품목의 수출에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협의
3. 해당 품목의 수입국 정부와의 협의
4. 해당 품목의 수입국 현지 조사

② 제1항의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수출허가 사항의 변경) ①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를 작성하여 해당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허가를 받은 후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전략기술 수출허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품목의 최종 목적지(국가) 및 최종 사용자의 변경
2. 해당 품목의 사용용도의 변경
3. 해당 품목 이외의 전략기술 통제번호가 다른 전략기술의 추가 등

③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의 처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단, 그 처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25조(수출허가의 유효기간) ① 전략물자의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은 1년(전략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수출허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다른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출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을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3.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포함한다),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공용물품
4.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화물로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5. 수입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6. 별표2의 제1부에 열거한 전략물자(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로서 수출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경우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략기술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단,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와 우리정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되어 수출되는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 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은 전략기술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별표2(바세나르체제 관련품목의 규격과 성능)에 열거한 품목 중 민감, 초민감, 또는 비확산 체제 관련 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기술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2. 별표2의 제1부에 열거한 기술(민감, 초민감, 또는 비확산 체제 관련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받을 기술료의 총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

제27조(수출허가의 취소 등) ①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수출허가서를 발급한 이후 국제정세 변화 또는 안보상 새로운 수출제한사유의 발생 등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전략기술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한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세관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수출허가서의 반환) 제23조에 따른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수출의 포기 등으로 수출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수출허가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수출허가서를 수출허가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3절 포괄수출허가

제29조(일반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① “일반포괄수출허가”라 함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제60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에게 별표9의 “가” 및 “나”지를 목적지로 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이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일반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인이 별표11(포괄수출허가 대상품목)에 정한 전략물자를 일정기간 수출하려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반포괄수출허가 신청을 받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허가를 할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0조(특정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① “특정포괄수출허가”라 함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제60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에게 별표9의 “가” 및 “나”지를 목적지로 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이 같은 수입자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수출이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특정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인이 별표11에 정한 전략물자를 특정포괄수출허가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간 외국의 동일 수입자에게 3건 이상 수출한 경우 그 수입자 및 수출품목을 정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정포괄수출허가 신청을 받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허가를 할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1조(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①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라 함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제60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가 외국인과의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된 전략물자를 가공한 후 위탁인이 지

정하는 목적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동 수출이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인이 별표2의 제1부(일반산업용 물자), 별표3의 제2부(원자력관련 일반산업용물자)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초민감 품목은 제외)를 별표9의 “가”지에 소재한 기업과 체결한 수탁가공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에 따라 수탁가공하고 이 기업이 주문하는 지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 신청을 받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허가를 할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자가 위탁자와의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변경사항의 범위 내에서 허가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신청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수탁가공계약서의 변경내용 중 단가 등 결제조건이 변경된 경우
2. 수탁가공계약서의 변경내용 중 HS 품목번호 및 전략물자 통제번호가 같은 단순변형 품목이 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

제32조(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 ①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일반포괄수출허가 또는 특정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인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신청서 2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포괄수출허가신청 대상품목의 수출실적 및 계획서
  2. 신청품목의 수입자 및 최종수하인의 개요
  3.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수입자의 최종수하인 진술서
  4. 포괄수출허가 신청품목의 명세서 및 용도설명서
  5.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제31조에 따른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인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신청서 2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서류
  2. 수탁가공계약서
  3.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상품의 성능과 용도를 나타내는 서류

중 하나

4.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위탁자의 최종수하인 진술서
  5. 그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제31조 제2항에 따른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제31조제4항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변경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 변경된 수탁가공계약을 첨부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포괄수출허가의 처리) ①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해당하는 포괄수출허가신청을 받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포괄수출허가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해당하는 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9조의 일반포괄수출허가 : 1년 이내
2. 제30조의 특정포괄수출허가 : 2년 이내
3. 제31조의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 : 3년 이내

제35조(포괄수출허가의 취소) ①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이고시 또는 제59조에 따른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포괄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64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받은 모든 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6조(적용배제) 전략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의 기술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재수출허가

제37조(재수출허가) ① 수입한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재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수출허가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재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제2절 개별수출허가에 정한 관련 조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재수출허가를 한 경우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재수출허가의 면제 및 적용배제) ① 수입한 전략물자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이 전략물자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수출 허가를 면제한다.

1. 해당 수입전략물자의 가액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가액의 25% 미만(시리아, 이란, 쿠바, 수단 및 북한이 목적지인 경우에는 10%미만)인 경우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으로부터 전략물자를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되는 경우 그 물품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② 제1항은 전략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의 전략기술수출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장 상황허가 및 중개허가

제39조(상황허가의 대상) ① 「대외무역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과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별표9의 “나”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과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해당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13. 「대외무역법」 제21조의 10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수입자 등의 거래적격 여부 확인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
14. 「대외무역법」 제21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 게재하고 허가를 받도록 통보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과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별표9의 “가”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그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대량과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그 물품등을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거나 또는 그 해당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제1항 제13호나 제14호에 해당되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한다.

제40조(상황허가의 신청) 제39조에 따라 상황허가를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의4호 서식에 따른 상황허가신청서 3부에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정하는 각각의 서류를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상황허가의 심사기준 및 처리) ① 제40조에 따라 상황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그 허가심사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수출허가의 일반원칙
2. 제16조의 수출허가의 지침
3. 제22조의 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② 제40조에 따라 상황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상황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상황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39조와 제40조에 따른 상황허가와 관련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장 제2절 개별수출허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허가사항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허가서 반환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보고에 관한 사항

제42조(중개허가의 대상) 별표2부터 별표7까지에 해당되는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개하고자 하는 전략물자의 수출국으로부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2. 해당 중개관련 당초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가”지역에 속하는 경우
3. 국내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지사포함)이 최종 사용할 목적으로 전략물자를 중개하는 경우

제43조(중개허가의 신청) 제42조에 따라 전략물자를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른 중개허가신청서 2부에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면제 가능)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와 관련된 계약 또는 거래관련 서류 1부
2. 해당 중개에 관련된 자(수출자, 수입자, 중개자)에 관한 설명자료
3. 해당 중개품목의 최종수하인진술서 1부
4. 그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4조(중개허가 심사기준 및 처리) ① 제43조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그 허가심사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수출허가의 일반원칙
  2. 제16조의 수출허가의 지침
  3. 제22조의 수출허가의 심사기준
- ② 제43조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중개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중개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제43조에 따른 중개허가와 관련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장 제2절 개별수출허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1. 허가사항변경 및 취소
  2. 허가서 반환

## 제6장 수입목적확인서 및 통관증명서

## 제1절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제45조(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① 전략물자·기술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표시한 수입목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 수입목적확인신청서 4부(수출자용, 수출국정부용, 세관용, 수입목적확인서발급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 수입내역 신고서
  2. 그밖에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신청자에게 해당 전략물자·기술의 수입사유서 및 수입자와 최종수하인의 매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수입목적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조(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 제45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47조(수입목적확인서의 재발급) ① 제45조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이미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급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발급된 수입목적확인서(훼손된 경우에 한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
2. 분실 또는 훼손된 해당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번호 및 일자

제48조(수입목적확인서의 변경신청) ① 제45조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의 발생 등으로 이미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급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다시 신청하는 자는 이미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9조(미사용 수입목적확인서의 반환) 제47조 또는 제48조에 정한 경우 이외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당초 거래의 미완결 등을 이유로 해당 전략물자·기술을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입목적확인서에 반환사유서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50조(관인날인 및 적용배제) ①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이 제45조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별표21에 따라 발급기관의 장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략물자·기술의 재수출) ① 제45조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전략물자·기술을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다시 수출(유상여부를 불문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출허가의 신청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이 경우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사후관리)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수입된 전략물자·기술의 제3국 유출 및 불법수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2절 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53조(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제출) ①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품목의 최종목적지 국가의 정부가 발행하는 통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략물자를 분할 선적하고자 하는 수출자가 제1항에 따른 통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매 분할선적에 대한 통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일괄해서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만 통관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통관증명서 미획득 보고) 전략물자 수출자가 해당 수입자 등으로부터 제53조 제1항의 통관증명서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 즉시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국내 통관증명서의 발급) ① 수입목적확인서가 요구되는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수출자의 요구 등에 따라 통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통관증명(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자용, 세관용)에 전략물자·기술 수입목적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관증명서의 발급기한은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56조(국내 통관증명서의 재발급) 제55조에 따른 통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통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통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
2. 분실 또는 훼손된 통관증명서의 증명번호, 발급일자 등

#### 제7장 자율준수체제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제57조(자율준수체제의 정의) "자율준수체제"라 함은 무역거래자가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이하 "자율수출관리기구"라 한다)를 갖추고, 「전략물자수출관리업무에 대한 운영규정」(이하 "자율수출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수출거래를 심사한 후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한다.

제58조(자율수출관리규정의 내용) ① 제57조에 따른 자율준수체제 운영을 위한 「자율수출관리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2. 전략물자 해당여부확인, 신고, 통보 및 수출심사 절차
3. 출하관리
4. 감사
5. 교육
6. 문서관리
7.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에 대한 지도
8. 보고
9. 벌칙

② 무역거래자가 제1항의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 별표10의 「표준자

을수출관리규정(안)」을 참고할 수 있다.

제59조(자율준수체제의 구성·운영 원칙) 자율준수체제의 구성·운영은 자사의 사업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독립성 : 자율수출관리기구는 자사의 영업부문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한다.
2. 책임성 :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신고, 거래 통보, 거래 심사 의뢰, 수출허가 신청, 출하 등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수출통제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고책임자로부터 실무자에게 이르기까지 그 책임소재가 명확하여야 한다.

제60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신청) ① 자율준수체제를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무역거래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회사소개서
  2.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도
  3.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자율수출관리규정」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신청을 한 무역거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40일 이내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 능력 보유 여부
2.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 및 사용용도 파악 능력 보유 여부
3. 자율적인 수출관리기구의 구축 및 운용 능력 보유 여부
4.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여부

제61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특례)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29조부터 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의 부여
2. 제20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중 같은 조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수출 후 7일 이내 제출 가능
3. 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42조에 따른 중개허가의 면제(단, 이 경우 중개 실적 및 심사자료를 매 반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허가기관에 보고하

여야 함)

제62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의무)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보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보고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체제 운영 현황
2. 반기보고 :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중개 실적 및 심사자료, 포괄허가 수출실적 및 제31조 제4항의 변경 내역
3. 그 밖에 당해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감사) 산업자원부장관은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제62조의 보고의무 사항과 전략물자생산·수출 실적 및 자율준수체제의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4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취소 및 특례 제한)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21조의7 제4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각 호의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보관·신고·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2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경우 또는 제61조 제2호의 서류 제출 기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제61조에 따라 부여받은 자율관리 범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5조(적용배제) 전략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의 전략기술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장 서류보관의무 및 자료의 공개

제66조(서류의 보관)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외무역법」 제21조의10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확인관련 : 통제품목과 취급품목을 비교·검토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와 유사한 자료
2. 판정관련 : 관련기관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전략물자·기술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통보받은 자료
3. 신고 및 통보 : 전략물자 해당여부 신고자료, 국내 거래상대방에게 통보한 자료
4.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 허가 신청자료 및 통보자료 또는 허가 신청여부 검토자료
5. 수입 관련 : 수입목적확인서, 수입계약서 등 전략물자·기술의 수입에 관련된 서류

제67조(자료의 공개)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사전판정 및 제13조에 따른 전략물자 신고 관련 자료를 수출통제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 시스템에 실을 수 있다.

1. 전략물자 품명
2. 규격 및 성능
3. 통제번호

## 제9장 보 칙

제68조(전략물자·기술 거래부적격자의 지정 및 공고)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제21조의1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로 지정·공고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를 전략기술 거래부적격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이 고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략기술의 수출을 행한 자
2. 이 고시의 규정에 위반되는 전략기술 수출행위에 고의로 가담한 자

제69조(벌칙의 적용) ① 별표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의 소관범위에 속하는 전략물자를 이 고시에 위반하여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54조(벌칙), 제56조(미수범), 제57조(과실범) 및 제60조(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방위사업청장 소관범위에 속하는 전략물자를 이 고시에 위반하여 수출한 자는 「방위사업법」 제62조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② 전략기술만을 수출하는 자가 이 고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은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전략기술수출의 승인), 제17조(벌칙), 제18조(양벌규정), 제19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전략기술수출의 승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70조(보고·검사 등) ① 「대외무역법」 제50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수입국

2. 수입자, 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그 소재지, 사업분야, 주요거래자 및 사용목적

3. 수입자·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위한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납세증명서 등 관련자료 또는 대외 공표자료

4. 운송수단·환적국(換積國)·대금결제방법

5. 전략물자의 해당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6. 선적된 품목의 수량 또는 개수(수출한 경우)

② 별표3의 제1부에 열거된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법」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4조에 따른 「국제규제물자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과학기술부 고시 제2004-5호) 제11조(국제이전) 및 제22조(보고사항)를 준용하며, 이에 따라 수출입 전에 미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2조 제4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모든 최종사용자로부터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수령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종사용자별 거래물량 등 기타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외무역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확인 의무 위반자의 조치)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4조의 3에 따라 제7조에 정한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표자의 위반사항 확인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명령

2. 제72조의 교육이수명령(제1호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다시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제72조(교육명령) ① 제71조 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은 「대외무역법」 제21의 11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이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하되, 교육이수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확인의무 위반자에게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및 교육을 받을 기관 등을 명시한 교육명령통지서 발송 : 산업자원부장관

2. 제1호의 교육명령통지서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이수 : 확인의무 위반자

3. 제2호의 교육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이수 현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 : 전략물자관리원장

4. 제1호의 교육대상자는 제71조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에 서명한 대표자 또는 실무담당자로 함

제73조(전략물자 수출허가실적 등의 통보) ① 방위사업청장 및 과학기술부장관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15의 부속서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15의 부속서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종합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바세나르체제의 별표15(Initial Elements)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기관의 장은 별표2에 열거된 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산업자원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의 수출허가를 거부한 경우

2. 최근 3년 동안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출 거부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④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기술이 포함된 전략물자의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18의 부속서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매 반기별로 반기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통합고시 개폐 등 협의의무) ① 관계 법규 및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지침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이 고시를 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부장관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사유가 그밖에 허가기관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5조(대외무역관리규정의 준용)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처리) ① 이 고시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21조의10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신고서를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신청서 및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정 2004. 10.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전략기술수출공고에 따라 전략기술수출승인과 관련한 과학기술부장관의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및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의한 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 - 123호(2002. 12)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3 - 5호(2003.5)는 폐지한다.

부 칙 <2차 개정 2005.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정 및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의한 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부 칙 <3차 개정 2006. 9.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34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17호)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정 및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의한 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부 칙 <4차 개정, 2007. 4.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과학기술부 고시 제2006-22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94호)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정 및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따른 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② 이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전략물자관리원 설립 이전까지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장”으로 본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제정 2007. 3. 21 과학기술부 훈령 제238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통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6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공통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업, 대학 등을 포함한다. 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제3조(활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지침을 토대로 소관 사업성격을 반영한 별도의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기초로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관리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장 보안관리 체계

제5조(보안관리심의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리심의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안관리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

원장이 정한다.

- ③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관리현황 보고사항
  3.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보안관리심의회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제6조(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보안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속한 기관의 장이 정한다. 단, 기관 실정에 맞도록 연구보안심의회는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는 운영이 어려운 연구기관에서는 연구기관의 장의 검토로 연구보안심의회는 기능을 대신 한다.

### 제3장 보안등급 분류

제7조(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I·II·III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라 군사 I·II·III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연구보안심의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보안심의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연구기관의 장은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할 때 보안등급에 관한 심사를 병행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제9조(보안등급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을 위한 조치

제10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의 마련 절차) ①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일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보안관리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제11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를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안조치 외에 제2호의 보안조치를 포함한다.

가.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연구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마.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바.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연구결과물 반출·대외제공·공개 시 연구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일반과제

가. 연구기관별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현황 보고)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현황을 년1회(10월중)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보안관리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연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보안관리심의회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소관 과제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점검에 필요한 자료요구 및 면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안사고 처리

제13조(보안사고 발생시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사고 발생 시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①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해서 보안관리심의회 의 심의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규정을 마련하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는 연구기관
2. 제12조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은 연구기관
3. 제13조에 따른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 제11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전에 보안등급을 확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계속과제의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는 분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지침

2007. 4. 1 국가정보원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의거, USB(Universal Serial Bus)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단,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교에 대해서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산하기관에 대하여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용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보조기억매체’라 함은 디스켓,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 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일체의 것으로 PC 등의 정보통신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 ② ‘보조기억매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각 팀 또는 과별 보조기억매체 관리상의 책임을 맡은 그 팀장 또는 과장을 말한다.
- ③ ‘보조기억매체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라 함은 해당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④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 이라 함은 보조기억매체의 등록, 파기, 재사용, 반출·입, 불용처리 현황 등에 관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⑤ ‘보조기억매체 관리번호’(이하 ‘관리번호’라 한다)라 함은 사용 중인 보조기억매체의 식별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 ⑥ 공인인증서보관용 보조기억매체 중 ‘업무용’ 이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신분확인 등에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 ⑦ 공인인증서보관용 보조기억매체 중 ‘개인용’ 이라 함은 인터넷 뱅킹 등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USB메모리 및 관리시스템 도입절차) ① 각급기관의 장은 USB 메모리를 도입할 경우 그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를 준용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 적합성 검

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수 보안기능의 유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적합성 검증결과에 반영한다.

1. 사용자 식별·인증기능
2. 지정데이터 암호·복호화 기능
3. 저장된 자료의 임의 복제 방지기능
4. 분실시 저장데이터의 보호를 위한 삭제 기능

③ 제2항 제2호의 지정데이터 암호·복호화 기능은 자료를 USB 메모리에 보관하는 경우로 한하며, 비밀자료를 PC에 보관 하거나 소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이 개발·보급한 암호장비·자재 등 국가용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운용중인 보조기억매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7호 서식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기억매체 사용) ① 각급기관은 보조기억매체를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억매체의 등록방법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각급 기관별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보조 기억매체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보조기억매체 사용제한) ① 각급기관은 등록된 보조기억 매체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목적 이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공인인증서용(업무용, 개인용)에 한하여 등록 후 개인소지 및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그 소속직원에게 공지, 교육을 통하여 보조기억매체의 임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책임자) ① 각급기관의 보조기억매체는 각 팀장 또는 과장 책임하에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팀장 또는 과장을 '관리책임자'라 칭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일반용, 비밀용 그리고 공인인증서용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장에 최종 변경된 보조기억매체의 등록현황을 등재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월 1회 이상 보조기억매체 수량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보조기억매체의 반·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이때 반·출입은 업무상 목적(별지 제5호 서식의 '용도'참조)에 한한다. 단, 사적소지가 허용된 공인인증서용은 제외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소속직원이 미등록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하거나 공인인증서용 보조기억매체에 업무자료를 보관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 또는 확인하는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보안담당관의 책무)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보조기억매체 등록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서 팀·과별 관리대장 사본을 비치·관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각 팀·과별 관리책임자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보조기억매체 라벨 작성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불용처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조기억매체를 일괄 구입하여 필요한 부서에 보급할 수 있다.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미등록 또는 공인인증서용 보조기억매체에 업무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수록된 자료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경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보보안담당관은 대외비 이상 비밀이 보관된 보조기억매체를 무단 반출하거나 미등록 또는 공인인증서용 보조기억매체에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정보보안담당관은 제5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밀 유출이 우려되거나 유출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기억매체의 구분 및 관리요령) ① 보조기억매체는 일반용, 비밀용(대외비 포함) 그리고 공인인증서보관용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보조기억매체(이하 '일반용' 이라 한다)의 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용에는 일반자료만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일반용은 캐비닛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3. 일반용에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이 기입·표시하여야 한다.

4. 관리번호는 팀·과명, 일반, 연번으로 한다. 이 경우 팀·과명은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예 : 총무과-일반-01, 총무과-일반-02, 총무-일반-03 등)

③ 대외비 이상 자료를 보관하는 비밀용 보조기억매체(이하 '비밀용'이라 한다) 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비밀용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대외비 이상의 기밀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도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2. 비밀용은 비밀자료와 동일하게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비밀용에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이 기입·표시하여야 한다.
  4. 비밀용을 사용하여 비밀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완료하거나 일시 중단할 때에는 PC에서 즉시 분리하여야 한다.
  5. 비밀용은 해당 비밀을 생산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등급별로 각각 보조기억매체를 마련해야 하며, 하나의 보조기억매체에 등급이 다른 비밀 또는 대외비를 혼합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6. 관리번호는 팀·과명, 비밀등급, 연번으로 한다. 이 경우 팀·과명은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공인인증서보관용 보조기억매체(이하 ‘공인인증서용’ 이라 한다)의 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단, 공인인증서를 CD-R 형태의 매체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관리요령 준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공인인증서용에는 공인인증서 이외의 자료를 저장할 수 없으며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서용은 소지·사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공인인증서용에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이 기입·표시하여야 한다.
  4. 관리번호는 팀·과명, 인증, 연번으로 한다. 이 경우 팀·과명은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기억매체 불용처리 및 재사용) ①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한 보조기억매체는 불용처리 시 물리적 파기를 원칙으로 하며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일반용을 타부서 이전 또는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록된 자료를 완전히 삭제·포맷 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비밀용을 일반용 또는 다른 등급의 비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또는 일반용을 외부기관에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일 삭제·포맷 및 필요한 경우 자성소거 등의 파일복원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공인인증서용을 타부서 이전 또는 퇴직 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업무용은 그 기록의 삭제·변경 등 적절한 조치 후 사용할 수 있고 개인용은 그 등록의 해지를 요한다.
- ⑤ 보조기억매체를 불용처리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기억매체의 분실, 소각시 대처방안) ① 취급자는 보조기억매체의 분실 또는 소각 등의 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보조기억매체의 분실 또는 소각사실을 보고 받은 즉시 정보보안담

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공인인증서용은 등록을 해지하고 취급자에게 사용상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일반용의 분실 또는 소각 사실을 통지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비밀용의 분실 또는 소각 사실을 통지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기억매체 고장·훼손, 오인 삭제·포맷시 대처방안) ① 보조기억매체의 고장, 자료의 훼손 또는 자료의 오인삭제, 포맷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불용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자료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 및 민간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조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단, 비밀자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우선 정보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보안업무규정』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4.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5. 『전자문서 보안조치 수행지침』
6.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7. 기타 관련 법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적합성 검증필 USB메모리 도입에 관한 경과조치) 각급기관의 장은 이 지침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는 USB메모리를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한 USB메모리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3조(준용규정의 변경) 제4조 제1항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를 2007년 7월 1일부터 「전자정부법」 제27조로 대체한다.

## 제 2 장 해외 기술유출방지 관련 법제

-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 보다는 영업비밀 보호관련 법령에서 기술유출을 규제하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자국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으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 1. 국제협정

- 파리협약에 부정경쟁금지 원칙이 도입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해 영업비밀 보호가 국제협정에 최초로 명문화된 데 이어, WTO/TRIPs 협정에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규정됨에 따라 영업비밀이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지적재산권의 영역으로 정착됨

### 가. 파리협약

-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조약으로 1883년 최초 협약에는 부정경쟁방지 규정이 없었으나, 1900년 브뤼셀 개정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 원칙이 도입됨
- 1911년 워싱턴 개정회의에서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로부터의 효과적 보호조치 의무화
- 하지만 동 협약은 영업비밀에 대해 구체적인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각국이 부정경쟁방지 차원에서 영업비밀을 자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데 불과

<표2-1> '파리협약' 부정경쟁 관련 조문

#### 제10조의2(부정경쟁)

- (1) 각 동맹국은 동맹국의 국민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 (2) 모든 형태의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경쟁행위는 부정행위를 구성한다.

## 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동 협정은 1992년 12월 체결되어 1994년부터 발효된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영업비밀이 국제규범에 반영된 최초의 사례이며, 영업비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표2-2> '북미자유무역협정' 영업비밀 관련 규정

#### 제1711조 - 영업비밀

각국은 건전한 상업적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합법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사람의 승낙 없이 영업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취득, 사용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단, 그와 같은 정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전체로서 또는 그 구성요소의 배열 및 조합의 형태로서, 당해정보의 종류를 통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업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비밀일 것
- (2) 비밀이기 때문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상업적 가치를 갖는 것
- (3) 적법하게 동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자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

## 다. WTO/TRIPs

- 1994년 4월 체결된 WTO/TRIPs협정<sup>1)</sup>은 다자간 국제협약상으로 영업비밀을 보호대상인 7가지 지적재산권 유형 중의 하나인 비공개 정보(Undisclosed Information)의 개념으로 규정
- 동 협정상 비공개정보(영업비밀)의 정의 및 보호요건은 미국 법제 및 NAFTA 규정과 유사하며, 다른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민·형사상 구제조치, 세관조치 및 분쟁해결절차 관련 규정이 적용됨

1)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 &lt;표2-3&gt; 'WTO/TRIPs' 영업비밀 관련 규정

## 제39조 제2항

자연인 및 법인은 합법적으로 자기의 통제하에 있는 정보가 자기의 동의 없이 건전한 상업적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개되거나, 타인에 의해서 획득 또는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단, 그와 같은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 (1) 전체로서 또는 그 구성요소의 정밀한 배열 및 조합의 형태로서, 당해정보의 종류를 통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업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비밀일 것
- (2)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를 갖는 것
- (3) 적법하게 동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자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

## 2. 미국

## 가.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s Act)

- 1979년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각 주의 판례법상 불균형 및 보호수준의 차이를 시정하기 위해 통일영업비밀법을 제정하고 각 주에 채택을 권고
- 2000년 6월 현재 41개 주에서 동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비밀법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법을 채택하지 않은 주는 주 법원의 판례법이나 주 형법상 영업비밀 절도죄, 일반 절도죄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음
- 영업비밀 유출피해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채택하여 고의 또는 악의에 의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2배까지 배상청구가 가능
- 민사적 구제에 반해 별도의 형사적 처벌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 나.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 기술유출 감시대상국의 산업스파이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1996년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을 제정
  - 외국의 산업스파이 행위를 미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여 외국이 관여된 산업스파이 행위를 가중 처벌
-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영업비밀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 및 매체에 의한 영업비밀의 도용과 전송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의한 정보전송 방법에 대해서도 열거하고 있음(Download, Upload, Transmit 등)
- 미국 내의 유출인 경우 영업비밀 절도죄(제1832조)를 적용하여 기업의 경우 최고 50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하고, 개인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미국외의 다른 국가로 유출한 경우 경제스파이죄(제1831조)를 적용하여 기업의 경우 최고 1,00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하고, 개인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하는 등 국내유출에 비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음

### 다. EXON-FLORIO 조항

-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 제5021조(EXON-FLORIO 조항)」에 의거, 외국 기업의 미국기업 인수합병시 핵심기술의 유출 등으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보류 및 금지처분을 가능하게 함

### 라.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

- 수출통제법상 「수출관리규정(EAR)」은 미국산 제품(Commodity), 기술(Technology), 소프트웨어(Software)가 일정비율 이상 포함되었거나 사용된 외국산 제품을 수출할 경우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미국산 제품, 기술, 소프트웨어가 25%(테러지원 국가의 경우 10%)를 초과하여 포함된 제품의 재수출시 규제대상이 되어 미국 상무부의 사전 수출승인 필요
- 해당국가의 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최장 수십년간 미국에 수출금지, 수출가액의 5배 벌금부과,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3. 중국

#### 가. 반부정당경쟁법

- 중국은 1993년 9월 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을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
-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및 피침해자가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여(제20조)
- 행정적 구제수단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 감독기관이 침해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건 정황에 따라 1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25조)
- 형사적 구제수단으로 영업비밀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침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을 벌금과 병과하거나 혹은 벌금에 처할 수 있음(형법 제219조)

#### 나. 국가안전법

- 1993년 2월 제정된 「국가안전법」에 따르면 산업기밀 누설을 국가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자 전원을 중형으로 처벌

#### 다. 인터넷관련 기밀보호법

- 2000년 1월 제정된 「인터넷관련 기밀보호법」에 따르면 인터넷상에 게재되는 정보를 사전 검열하여 첨단기술 또는 국가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자를 최고 사형으로 처벌

#### 라. 수출금지·수출제한기술 관리판법

- 국가 비밀기술의 수출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수출입시 수출금지·수출제한·수출자유 기술로 구분하여 국외로의 기술유출을 통제



- 수출제한 기술에 대해서는 국무원 상무부에서 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수출금지 및 제한기술 : 45개(중국 기술수출·제한목록)

<표2-4> 주요국의 산업기밀 보호관련 법령

구 분	영업비밀보호법 (한국)	경제스파이법 (미국)	부정경쟁방지법 (일본)	반부정당경쟁법 (중국)	
범죄구성요건	주체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경영자 및 제3자
	침해의사	정당한 이유 없는 누설	권한 없는 행위의사	고의/중과실	계약위반 행위,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신분범	누구든지 (비신분범)	비신분범	비신분범	신분범 (전·현직 직원)
	목적범	부정이익 또는 기업손해 목적	외국이익 인지 또는 의도	부정이익 또는 기업손해 목적	-
	보호대상	기업의 비밀 (Know-how 포함)	기술/영업상 정보 (Know-how 포함)	기술/영업상 정보	기술/경영상 정보
소추요건	비친고죄	비친고죄	비친고죄	비친고죄	
가중처벌	외국관련	외국관련	-	-	
미수,예비, 음모, 양벌규정	-미수,예비,음모처벌 -양벌규정 적용	미수, 음모 처벌 조직 범죄 처벌	양벌규정 적용	양벌규정 적용	
형 별	국외유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국내유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국외(경제간첩) - 개인: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달러 이하 벌금  국내(영업비밀절도) - 개인: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 이하 벌금 - 법인: 500만달러 이하 벌금	- 개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  - 법안 3억엔 이하 벌금	- 영업비밀 침해시 감독조사기관의 침해행위중지명령 가능 - 1만~20만위엔의 벌금 부과 (한화 125만원~2,500만원)	

## 4. 일본

-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 이외에도 행정관청에서 제정한 각종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가. 부정경쟁방지법

- 일본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의 보호요건, 침해 태양, 민사적 구제수단 등에 대한 내용은 우리 법과 유사함
- 자국의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국, 미국, 독일 등 외국의 영업비밀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2005년 6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 2005년 11월부터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함
  - 영업비밀 침해죄 형벌수준 강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
  - 영업비밀 국외사용 및 공개행위 처벌
  -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사용·공개행위 처벌
  - 법인도 처벌 가능토록 규정

### 나. 영업비밀관리지침

-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3년 1월 각 기업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관리지침」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 6월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에 따라 2005년 10월 '영업비밀관리지침'을 개정함
- '영업비밀관리지침'은 기업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방침을 제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이 법률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관리수준과 영업비밀 취급시의 유의사항 등을 설명
- 이 지침은 영업비밀의 바람직한 관리기준을 4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음
  - 물리적·기술적 관리
    - 기록매체 관리(물리적 관리) : 정보 구분과 표시, 접속 권한자 특정, 매체의 보관, 반출제한, 폐기, 시설 등의 관리
    - 정보 자체의 관리(기술적 관리) : 매뉴얼 등의 설정, 접속 및 접속 관리자의 특정, 외부 침입에 대한 방어, 데이터 소거·폐기

- 인적 관리
  - 영업비밀 취급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해 일상적으로 교육·연수 실시
  - 임직원, 파견사원, 퇴직자, 전직자, 거래처 등 상대방에 따른 적절한 관리
- 법적 관리
  - 기업과 종업원 및 퇴직자와의 적절한 비밀유지계약
- 조직적 관리
  - 물리적·기술적 관리 및 인적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문제 발생시  
시의 적절하게 대응

#### 다. 기술유출방지지침

-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3년 3월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의도하지 않은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유출방지지침」을 제정
- 이 지침은 의도하지 않은 기술유출이 발생하는 주요 유형을 설명하고, 선진기업의 대응사례를 통해 기업이 참고할만한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제시함
- 해외 진출시 기술이전 전략, 사내 조직체제, 사업활동, 사내 교육, 사후관리 등 경영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

## 제 3 장 보안서류 양식 예시2)

---

2) 본 서식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 및 유출시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중소기업이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음

## 보안관리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 임직원 및 외부 협력업체와 파트너, 기타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② “정보자산”이란 “정보와 정보시스템”을 포괄한 개념을 말한다.
- ③ “정보시스템”이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전산시스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각종 영상매체시설물 등 “정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산을 말한다.
- ④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2장 보안업무 분류

제4조(보안업무의 분류) ① 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해 “일반업무”와 “보안업무”로 구분하고, “보안업무”는 다시 “일반보안업무”와 “시스템보안업무”로 구분한다.

② “시스템보안업무”는 컴퓨터, 통신망 등 주로 컴퓨터를 통하여 진행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보안업무를 말하며, “일반보안업무”는 그 이외의 모든 부문의 정보보안업무로 정의한다.

### 제3장 보안조직 및 기능

제5조(보안업무의 조직 및 기능) ① 회사는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보안관리 부서를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보안업무”와 “시스템보안업무” 등 회사내 모든 보안관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보안실무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회사의 보안실무책임자는 보안에 관련된 제반 규정 및 지침 등을 수립·조정하며, 영업비밀등급분류, 영업비밀서약서 집행, 보안교육실시 및 기타 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보안실무책임자는 정기적으로 보안담당 임원 및 최고경영자에게 현황을 보고하고 전 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④ 보안부서 및 보안실무책임자는 각 부서장과 업무 공조체계를 수립하고 사내 주요 보안 상황을 공유한다.

### 제4장 자산관리

제6조(영업비밀의 분류와 분류기준) ①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극비”, “대외비”, “일반” 등 3단계로 분류한다.

② “극비”란 경쟁사 및 대외로 유출될 경우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영업비밀”을 말한다.

1.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영업비밀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영업비밀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영업비밀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영업비밀
5. 기타 회사의 핵심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회사가 판단되는 영업비밀

③ “대외비”란 경쟁사 및 대외로 유출될 경우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영업비밀 중 “극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④ “일반”이란 “극비” 또는 “대외비”가 아닌 그 이외의 “정보”를 말한다.

⑤ 영업비밀분류는 일정 기간마다 새롭게 지정·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다.

제7조(영업비밀의 취급과 관리) ① 회사는 핵심 영업비밀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을 선

정함에 있어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 ② 핵심영업비밀로 분류된 각종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별도의 보안장치를 마련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한다.
- ③ 각 부서장은 부서내의 모든 영업비밀을 관리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 ④ 영업비밀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달리 설정·관리한다.
- ⑤ 사용자 접근권한은 사용자의 입·퇴사, 계약종료, 역할조정 등 사유발생시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다.
- ⑥ 핵심영업비밀 자료와 주요 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이를 관리하는 보호구역을 선정할 수 있으며, CCTV와 시건장치 설치 및 기타 출입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 ⑦ “극비”와 “대외비” 등급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반출시에는 반드시 부서장 및 보안담당 임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제8조(물품의 반입·반출) ① 회사의 자산 및 물품의 반입·반출시 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를 받는다.

- ② NOTE PC 및 전산매체 등의 반입·반출시 사용자는 기기사양, 사용용도, 사용자 정보 등을 작성하고 관리책임자는 이를 직접 확인·보관한다.
- ③ 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물품의 반입·반출시 사용자를 검열할 수 있다.
- ④ 물품의 반입·반출시 발생한 보안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와 관리책임자에게 있다.

제9조(비상대책) ① 각 부서장은 부서내 주요 영업비밀에 대해 복사본을 작성하여 보안관리 부서와의 협의 하에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관리한다.

- ② 보안실무책임자는 화재나 수해 등 자연재해 및 회사 기밀유출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전임직원에게 공지한다.

## 제5장 인력관리

제10조(보안서약서 작성) ① 모든 임직원은 입퇴사시와 연봉계약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한다.

- ② 회사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국내외 업체 또는 개인은 매 계약체결시마다 영업비밀보호서약을 작성한다.
- ③ 보안실무책임자는 기타 특별관리가 필요한 업무 수행업체 또는 수행자에 대해 별도의 영업비밀보안서약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교육의 실시) ① 모든 임직원은 입사시 사내 보안교육을 받도록 한다.

- ②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③ 보안담당부서 소속 임직원은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받도록 한다.
- ④ 보안교육은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 실시할 수 있다.

## 제6장 시스템 보안관리

제12조(컴퓨터 사용) ① 회사 내 모든 컴퓨터 사용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② 회사 내 모든 컴퓨터 사용자는 바이러스 침입 및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각종 보안솔루션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백업, 업데이트 관리를 한다.

제13조(통신망 사용) ① 회사 내에서는 회사 임직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신망만을 사용한다.

② 보안관리 부서 및 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인터넷 상의 특정 사이트 접속을 통제할 수 있다.

③ 회사 내에서는 회사에서 승인한 이메일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④ 외부로 문서를 발송할 경우에는 부서장 및 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를 받는다.

제14조(시스템 관리) ① 보안관리 부서에서는 회사의 보안시스템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전임직원에게 공지한다.



## 제7장 기타 보안관리

제15조(보안점검의 실시) ① 회사는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직원과 각 부서를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특정 임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

② 보안점검결과는 경영자에게 보고되고 회사 전체에 공지되어 자체적인 개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6조(보안규정 위반자 조치사항) ① 보안규정을 위반한 임직원과 부주의와 과실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책임자 또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별도의 사유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② 보안사고 발생시 업무 담당자와 보안 담당자 등은 사건 조사 및 해결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입사자/재직자용)

\_\_\_\_\_ 본인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재직하면서(휴직기간 포함) 회사의 영업비밀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재직 중 회사의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개발, 생산, 판매방법 및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단,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거나 영업비밀보호 관련 규정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함)
3. 본인은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 등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고 회사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 등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4.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사, 녹음,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일체 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단,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거나 영업비밀보호관련 규정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함)
5. 본인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 및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회사의 메일통제 및 검열에 동의합니다.
6. 본인은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작성,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7. 본인은 재직 중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 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검직하거나 자문하는 등 해당 업체에 협력하지 않겠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협의하겠습니다.
8. 본인은 퇴사 후에도 재직 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9. 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한 권리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회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위의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규에 따른 조치를 감수할 것은 물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소 속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_\_\_\_\_ (서명)

○ ○ ○ ○ 주식회사 귀중

## NON-DISCLOSURE AGREEMENT

(For employees)

I make the following oaths in regard to the protection of \_\_\_\_\_ company'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any") business secrets during my term of office or after resignation.

1. I shall abide by company regulations in regard to technical or managerial information useful to the development, manufacturing, sales and other business activ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secrets"), which possess independent economic value preserved in secret and not open to the public during my term of office and take the legal responsibility for violating them.
2. I shall not divulge or disclose company's business secrets to a third party and shall not use it for any private purposes except for designated business use. (This provision will not be applied when prior written consent was made with the company or if it is permitted by non-disclosure regulation.)
3. I shall not gain access to any information or facility without permission and shall abide by company regulations, guidelines and policies on confidential information.
4. I shall not reproduce company's business secrets in any possible methods such as reprinting, recording, photographing and shall not privately possess any forms of duplicates except for the use for designated duties. (This rule shall not be applied when prior written consent is made with the company or if it is permitted by non-disclosure regulation.)
5. I shall agree to receive mail inspection conducted by the company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echnology or information spillage, which can cause damage to the company.
6. I shall acknowledge that the company holds the ownership of technology, information and outputs developed (composed, designed and devised) with other people or individually during my term of office.

7. I shall not cooperate with competing companies by working for or providing consulting services to them and shall consult with the company when such occasions arise.
8. I shall not disclose or unveil company's business secrets obtained during my term of office to a third party after resignation.
9. I shall cooperate with the company when legal conflict arises regarding my duties in charge during my term of office or after resignation.

I pledge that I will duly observe the above mentioned agreements and shall bear legal responsibility and compensate for the damages caused to the company for violating them according to the laws and company regulations on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

Date: . . .

Name of Organization:

Resident Registration No.: -

Name: \_\_\_\_\_ (Signature)

**To \_\_\_\_\_ Company**

## 商业秘密保护协议书

(新进职员/在职者)

\_\_\_\_\_ 本人在○○○○股份有限公司（以下简称为“公司”）在职（包括休假期间）期间，为了保守公司的商业秘密等，签订以下协议：

1. 本人将严格遵守公司关于保守未公开并拥有独立经济价值的，具有保密性的开发、生产、销售方法及有利于其他营业活动的技术或经营信息(以下简称“商业秘密”)的各种相关规定，并将对此负责。
2. 公司的商业秘密除用于指定的业务以外，本人不以任何理由用于私人目的及向公司内外的第三者泄露或公开。(有公司的事前书面同意或依据商业秘密保密规定允许的情况可除外)
3. 本人决不接触公司禁止接触的信息或设施，严格遵守公司的保安规定、指南及政策。
4. 公司的商业秘密除用于所指定的业务以外，本人决不复印、录音、录像及利用其他方法进行复制，并不私自保留与此相关的任何形态的副本。(有公司的事前书面同意或依据商业秘密保密规定允许的情况可除外)
5. 为了防止泄露有可能给公司造成损失的技术和信息，同意公司控制和检阅本人的邮件。
6. 本人承认在职期间独自或与他人共同制作、开发、设计、发明的与业务相关的技术与信息以及产品的相应所有权属于公司。
7. 本人决不在有可能泄露公司商业秘密的同性质或性质类似的企业里任兼职或做咨询。如发生此种情况应与公司进行协议。
8. 离职后如不经公司的事前同意，本人将不以任何方式向第三者泄露或公开在职期间所知悉的商业秘密。
9. 在职中或离职后，如公司要对本人所负责的并与业务有关的权利采取法律措施时，本人将积极协助公司。

本人将严格遵守上述事项，如因违反上述事项而给公司造成损失时，本人将依据有关防止不正当竞争及商业秘密保密的有关法律、公司规定接受处罚，并赔偿公司的损失及负民事、刑事责任。

200 年 月 日

确认上述内容。

所属：

身份证号码：

姓名：

(签名)

○ ○ ○ ○ 股份有限公司

## 営業秘密保護誓約書

(入社者/在職者用)

私、\_\_\_\_\_は、〇〇〇〇株式会社(以下“貴社”と称する)に在職するにあたり(休職期間を含む)貴社の営業上の秘密などの保持に関して以下のように遵守することを誓約致します。

1. 私は、在職中貴社の公知の情報ではなく、独立した経済的価値を持つもので、相当の努力により秘密として維持されてきた貴社の開発、生産、販売方法及び、その他の営業活動に有用な技術上、若しくは経営上の情報(以下“営業秘密”と称する)の保護に関する貴社の各種規程を徹底的に遵守し、それに対して責任を持ちます。
2. 私は、貴社の営業秘密に対し、指定された業務に使用する場合を除いては如何なる理由であれ、私的な目的で使用、会社内の第三者に漏洩、公開致しません。(但し、貴社からの事前書面同意がある場合、若しくは営業秘密保護に関する規程により許可された場合には例外とする。)
3. 私は、許可されていない情報や施設などには絶対接近せず、貴社の保安規程及び指針、政策などを必ず遵守致します。
4. 私は、貴社の営業秘密に関して指定された業務に使用する場合を除いてはコピー、録音、撮影及びその他の方法による複製を一切致しません。また、如何なる写本も個人的に保有致しません。(但し、貴社からの事前書面同意がある場合、若しくは営業秘密保護に関する規程により許可された場合には例外とする。)
5. 私は、貴社に損害を与え得る技術及び情報の流出防止の為に貴社が行うメール制限及び検閲に同意致します。
6. 私は、在職中に業務と関連し独自の、または共同で作成、開発、設計、考案した技術や情報及びそれに準ずる産出物に対する所有権が貴社に所属することを確認致します。
7. 私は、在職中貴社の営業秘密の漏洩する恐れのある同種、類似の会社の役員や職員、相談役を兼職するなど、該当会社に協力する行為は致しません。また、そのような状況に置かれる場合には貴社に直ちに報告し相談致します。
8. 私は、退社後においても在職中知得した営業秘密を貴社の事前同意なしに如何なる方法によっても第三者に漏洩、公開、若しくは使用致しません。
9. 私は、在職中または退社後においても貴社が私の担当業務と関連した権利の法的措置を取る場合、貴社に積極的に協力致します。



私は、上記の事項を誠実に遵守致します。万一、上記の誓約事項に違反し、貴社に損害を与えた場合には不正競争防止及び、営業秘密保護に関する法律及び貴社の規則に従った措置を甘受することはもちろん、これにより貴社が被った一切の損害を賠償し、すべての民事・刑事上の責任を負うことを誓約致します。

200 年 月 日

上記内容を確認しここに署名致します。

所 属：

住 所：

氏 名： \_\_\_\_\_ (署名)

○ ○ ○ ○ 株式会社

代表取締役 \_\_\_\_\_ 殿

##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외국인용)

\_\_\_\_\_ 본인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재직하면서(휴직기간 포함) 회사의 영업비밀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재직 중 회사의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개발, 생산, 판매방법 및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 등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고 회사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 등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4.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사, 녹음,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일체 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 및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회사의 메일통제 및 검열에 동의합니다.
6. 본인은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작성,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7. 본인은 퇴사 후에도 재직 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8. 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한 권리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회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위의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규에 따른 조치를 감수할 것은 물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국           적 :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

소           속 :

성           명 : \_\_\_\_\_(서명)

○ ○ ○ ○ 주식회사 귀중

## NON-DISCLOSURE AGREEMENT

(For foreigners)

I make the following oaths in regard to the protection of \_\_\_\_\_ company'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any") business secrets during my term of or leave of office.

1. I shall abide by company regulations in regard to technical or managerial information useful to the development, manufacturing, sales and other business activ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secrets"), which possess independent economic value preserved in secret and not open to the public during my term of office and take the legal responsibility for violating them.
2. I shall not divulge or disclose company's business secrets to a third party and shall not use it for any private purposes except for designated business use.
3. I shall not gain access to any information or facility without permission and shall abide by company regulations, guidelines and policies on confidential information.
4. I shall not reproduce company's business secrets in any possible methods such as reprinting, recording, photographing and shall not privately possess any forms of duplicates except for the use for designated duties.
5. I shall agree to receive mail inspection conducted by the company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echnology or information spillage, which can cause damage to the company.
6. I shall acknowledge that the company holds the ownership of technology, information and outputs developed (composed, designed and devised) with other people or individually during my term of office.
7. I shall not cooperate with competing companies by working for or providing consulting services to them and shall consult with the company when such occasions arise.
8. I shall not disclose or unveil company's business secrets obtained during my term of office to a third party after resignation.

9. I shall cooperate with the company when legal conflict arises regarding my duties in charge during my term of office or after resignation.

I pledge that I will duly observe the above mentioned agreements and shall bear legal responsibility and compensate for the damages caused to the company for violating them according to the laws and company regulations on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

Date: . . .

Nationality:

Resident Registration No.

(or Foreign Registration No.):

Name: \_\_\_\_\_ (Signature)

To \_\_\_\_\_ Company

## 商业秘密保护协议书

(外国人)

\_\_\_\_\_ 本人在○○○○股份有限公司（以下简称为“公司”）在职（包括休假期间）期间，为了保守公司的商业秘密等，签订以下协议：

1. 本人将严格遵守公司关于保守未公开并拥有独立经济价值的，具有保密性的开发、生产、销售方法及有利于其他营业活动的技术或经营信息(以下简称“商业秘密”)的各种相关规定，并将对此负责。
2. 公司的商业秘密除用于指定的业务以外，本人不以任何理由用于私人目的及向公司内外的第三者泄露或公开。
3. 本人决不接触公司禁止接触的信息或设施，严格遵守公司的保安规定、指南及政策。
4. 公司的商业秘密除用于所指定的业务以外，本人决不复印、录音、录像及利用其他方法进行复制，并不私自保留与此相关的任何形态的副本。
5. 为了防止泄露有可能给公司造成损失的技术和信息，同意公司控制和检阅本人的邮件。
6. 本人承认在职期间独自或与他人共同制作、开发、设计、发明的与业务相关的技术与信息以及产品的相应所有权属于公司。
7. 离职后如不经公司的事前同意，本人将不以任何方式向第三者泄露或公开在职期间所知悉的商业秘密。
8. 在职中或离职后，如公司要对本人所负责的并与业务有关的权利采取法律措施时，本人将积极协助公司。

本人将严格遵守上述事项，如因违反上述事项而给公司造成损失时，本人将依据有关防止不正当竞争及商业秘密保密的有关法律、公司规定接受处罚，并赔偿公司的损失及负民事、刑事责任。

200 年 月 日

确认上述内容。

国 籍：

外国人登记号码/护照号码：

所 属：

姓 名： (签名)

○ ○ ○ ○ 股份有限公司

## 営業秘密保護誓約書

(外国人用)

私、\_\_\_\_\_は、〇〇〇〇株式会社(以下“貴社”と称する)に在職するにあたり(休職期間を含む)貴社の営業上の秘密などの保持に関して以下のように遵守することを誓約致します。

1. 私は、在職中貴社の公知の情報ではなく、独立した経済的価値を持つもので、相当の努力により秘密として維持されてきた貴社の開発、生産、販売方法及び、その他の営業活動に有用な技術上、若しくは経営上の情報(以下“営業秘密”と称する)保護に関する貴社の各種規程を徹底的に遵守し、それに対して責任を持ちます。
2. 私は、貴社の営業秘密に対し、指定された業務に使用する場合を除いては如何なる理由であれ、私的な目的で使用したり、会社内の第三者に漏洩、公開致しません。
3. 私は、許可されていない情報や施設などには絶対接近せず、貴社の保安規程及び指針、政策などを必ず遵守致します。
4. 私は、貴社の営業秘密に関して指定された業務に使用す致しません。また、如何なる写本も個人的に保有致しません。
5. 私は、貴社に損害を与え得る技術及び情報の流出防止の為に貴社が行うメール制限及び検閲に同意致します。
6. 私は、在職中業務と関連し独自の、または共同で作成、開発、設計、考案した技術や情報及びそれに準ずる産出物に対する所有権が貴社に所属することを確認致します。
7. 私は、退社後においても在職中知得した営業秘密を貴社の事前同意なしに如何なる方法によっても第三者に漏洩、公開、若しくは使用致しません。
8. 私は、在職中または退社後においても貴社が本人の担当業務と関連した権利の法的措置を取る場合、貴社に積極的に協力致します。



私は、上記の事項を誠実に遵守致します。万一、上記の誓約事項に違反し、貴社に損害を与えた場合には不正競争防止及び、営業秘密保護に関する法律及び貴社の規則に従った措置を甘受することはもちろん、これにより貴社が被った一切の損害を賠償し、すべての民事・刑事上の責任を負うことを誓約致します。

200 年 月 日

上記内容を確認しここに署名致します。

国 籍：

外国人登録No.：

パスポートNo.：

所 属：

氏 名： \_\_\_\_\_ (署名)

○ ○ ○ ○ 株式会社

代表取締役 \_\_\_\_\_ 殿

## 영업비밀보호서약서

(퇴직자용)

\_\_\_\_\_ 본인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퇴사 후 회사의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개발, 생산, 판매방법 및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본인은 퇴사 후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단,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거나 영업비밀보호관련 규정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함)
3. 본인은 퇴사시 재직 중 본인이 취득하거나 관리하고 있던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퇴사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 및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회사의 메일통제 및 검열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작성,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6. 본인은 퇴직일로부터 적어도 ○○년간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겠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협의하겠습니다.
7. 본인은 퇴사 후에도 재직 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8. 본인은 퇴사 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한 권리의 법적조치를 취할 경우 회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위의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규에 따른 조치를 감수할 것은 물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소        속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_\_\_\_\_ (서명)

○ ○ ○ ○ 주식회사 귀중

## NON-DISCLOSURE AGREEMENT

(For retirees)

I make the following oaths in regard to the protection of \_\_\_\_\_ company'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any") business secrets as I leave the company.

1. I shall abide by company regulations in regard to technical or managerial information useful to the development, manufacturing, sales and other business activ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secrets"), which possess independent economic value preserved in secret and not open to the public after I leave the company and take the legal responsibility for violating them.
2. I shall not divulge or disclose company's business secrets to a third party and shall not use it for any private purposes. (This provision will not be applied when prior written consent was made with the company or if it is permitted by non-disclosure regulation)
3. I shall return all the material that contain business secrets to the company shall not privately possess any forms of duplicates as I leave the company.
4. I shall agree to receive mail inspection conducted by the company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echnology or information spillage, which can cause damage to the company.
5. I shall acknowledge that the company holds the ownership of technology, information and outputs developed (composed, designed and devised) with other people or individually during my term of office.
6. I shall not join in the company in similar fields or start a business, which can cause business secrets spillage at least OO years after my resignation and shall consult with the company when such occasions arise.
7. I shall not disclose or unveil company's business secrets obtained during my term of office to a third party after resignation.
8. I shall cooperate with the company when legal conflict arises regarding my duties in charge during my term of office or after resignation.

I pledge that I will duly observe the above mentioned agreements and shall bear legal responsibility and compensate for the damages caused to the company for violating them according to the laws and company regulations on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

Date: . . .

Name of Organization:

Resident Registration No.: -

Name: \_\_\_\_\_ (Signature)

To \_\_\_\_\_ Company

## 商业秘密保护协议书

(离职者)

\_\_\_\_\_ 本人从○○○○股份有限公司（以下简称为“公司”）离职时，为了保守公司的商业秘密等，签订以下协议：

1. 本人离职后将严格遵守公司关于保守未公开并拥有独立经济价值的，具有保密性的开发、生产、销售方法及有利于其他营业活动的技术或经营信息(以下简称“商业秘密”)的各种相关规定，并将对此负责。
2. 离职后对于公司的商业秘密，本人不以任何理由用于私人目的及向公司内外的第三者泄露或公开。（有公司的事前书面同意或依据商业秘密保密规定允许的情况可除外）
3. 离职时本人将移交在职期间所知悉的或所管理的与商业秘密有关的一切资料，且不私自保留与此相关的任何形态的副本。
4. 离职时为了防止泄露有可能给公司造成损失的技术和信息，同意公司控制和检阅本人的邮件。
5. 本人承认在职期间独自或与他人共同制作、开发、设计、发明的与业务相关的技术与信息以及产品的相应所有权属于公司。
6. 从离职日算起最少○○年内，本人将不创办企业或就职于有可能泄露公司商业秘密的同性质或性质类似的企业。如发生此种情况应与公司进行协议。
7. 离职后如不经公司的事前同意，本人将不以任何方式向第三者泄露或公开在职期间所知悉的商业秘密。
8. 在职中或离职后，如公司要对本人所负责的并与业务有关的权利采取法律措施时，本人将积极协助公司。

本人将严格遵守上述事项，如因违反上述事项而给公司造成损失时，本人将依据有关防止不正当竞争及商业秘密保密的有关法律、公司规定接受处罚，并赔偿公司的损失及负民事、刑事责任。

200 年 月 日

确认上述内容。

所属：

身份证号码：

姓名：

(签名)

○ ○ ○ ○ 股份有限公司

## 営業秘密保護誓約書

(退職者用)

私、\_\_\_\_\_は、〇〇〇〇株式会社(以下“貴社”と称する)を退職するにあたり貴社の営業秘密などの保持に関して以下のように遵守することを誓約致します。

1. 私は、退社後においても貴社の公知の情報ではなく、独立した経済的価値を持つもので、相当の努力により秘密として維持されてきた貴社の開発、生産、販売方法及び、その他の営業活動に有用な技術上、若しくは経営上の情報(以下“営業秘密”と称する)保護に関する貴社の各種規程を徹底的に遵守し、それに対して責任を持ちます。
2. 私は、退社後、貴社の営業秘密に関して如何なる理由であれ、私的な目的で使用、会社内の第三者に漏洩、公開致しません。(但し、貴社からの事前書面同意がある場合、若しくは営業秘密保護に関する規程により許可された場合には例外とする。)
3. 私は、退社の際、在職中私が入手し、管理した営業秘密と関係のあるもの含まれた全ての資料を貴社に返却、返還し、営業秘密に関する如何なる写本も個人的に保有致しません。
4. 私は、退社の際、貴社に損害を与え得る技術及び情報の流出防止の為に貴社が行うメール制限及び検閲に同意致します。
5. 私は、在職中に業務と関連し独自の、または共同で作成、開発、設計、考案した技術や情報及びそれに準ずる産出物に対する所有権が貴社に所属することを確認致します。
6. 私は、退職日から最低〇〇年間、貴社の営業秘密の漏洩する恐れのある同種、類似の企業に就職したり、競業する企業を開業したり致しません。また、そのような状況に置かれる場合には貴社と相談致します。
7. 私は、退社後も在職中知得した営業秘密を貴社の事前同意なしに如何なる方法によっても第三者に漏洩、公開致しません。
8. 私は、退社後も貴社が私の担当業務と関連した権利の法的措置を取る場合、貴社に積極的に協力致します。



私は、上記の事項を誠実に遵守致します。万一、上記の誓約事項に違反し、会社に損害を与えた場合には不正競争防止及び、営業秘密保護に関する法律及び貴社の規則に従った措置を甘受することはもちろん、これにより貴社が被った一切の損害を賠償し、すべての民事・刑事上の責任を負うことを誓約致します。

200 年 月 日

上記内容を確認しここに署名致します。

所 属：

住 所：

氏 名：\_\_\_\_\_ (署名)

○ ○ ○ ○ 株式会社

代表取締役\_\_\_\_\_殿

## 영업비밀보호서약서

(협력업체-기업용)

\_\_\_\_\_ (이하 “을”이라 한다)은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갑의 영업비밀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을 및 그 임직원(이하“을 등”이라 한다)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약기간 중 계약 수행을 위하여 지득한 갑의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을 등은 갑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 등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고 갑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 등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3. 갑이 을의 업무 편의를 위해 제공한 전산 ID 및 패스워드, 출입증 등은 을만이 알고 사용하였으며, 절대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대여·양도하지 않겠습니다.
4. 을은 계약 종료시 갑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갑에게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5. 을은 계약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작성,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권이 갑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6. 을 등은 계약기간 중 갑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갑의 각종 규정 및 현행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에 협조하겠습니다.
7. 만일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을 등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해 갑과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위의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갑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갑에 대한 손해배상과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서약자 소속사(기관)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_\_\_\_\_(직인)

○ ○ ○ ○ 주식회사 귀중

## NON-DISCLOSURE AGREEMENT

(For collaborative companies)

\_\_\_B\_\_\_ company make the following oaths in regard to the protection of \_\_\_A\_\_\_ company'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any") business secrets while the two companies maintain their collaborative relationship.

1. \_\_\_B\_\_\_ company and the employer and employees of the company shall not use or disclose \_\_\_A\_\_\_ company's information asset, security information, business secrets and other intellectual asse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Secrets") acquired within a term of a contract or after the contract to a third party.
2. \_\_\_B\_\_\_ company shall not gain access to any information or facility without permission from \_\_\_A\_\_\_ company and shall abide by company regulations, guidelines and policies on confidential information.
3. \_\_\_B\_\_\_ company shall not lend or transfer electronic ID, password, ID card provided from \_\_\_A\_\_\_ company for business convenience to other people and shall abide by \_\_\_A\_\_\_ company's regulations, guidelines and policies on confidential information.
4. \_\_\_B\_\_\_ company shall return all the material which contain business secrets provided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duties to \_\_\_A\_\_\_ company and shall not retain any forms of duplicate.
5. \_\_\_B\_\_\_ company shall acknowledge that \_\_\_A\_\_\_ company holds the ownership of technology, information and outputs developed (composed, designed and devised) with other people or individually during a term of a contract.
6. \_\_\_B\_\_\_ company shall abide by \_\_\_A\_\_\_ company's regulations and national laws regarding protection of business secrets.
7. \_\_\_B\_\_\_ company acknowledges that the contract can be cancelled when \_\_\_A\_\_\_ company infringes the above mentioned agreements.

\_\_\_B\_\_\_ company pledge that it will duly observe the above mentioned agreements and shall bear legal responsibility and compensate for the damages caused to \_\_\_\_\_ company for violating it according to the laws and company regulations on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

Date: . . .

Name of Organization:

Business Registration No.: -

Social Security No. of the representative:

Name of the representative: \_\_\_\_\_(Signature)

**To \_\_\_\_\_ Company**

## 商业秘密保护协议书

(合作商-公司)

\_\_\_\_\_ (以下简称为“乙方”) 与○○○○股份有限公司 (以下简称为“甲方”) 在合作期间, 为了保守甲方的商业秘密等, 签订以下协议:

1. 乙方及其职员 (以下简称为“乙等”) 在合同期间以及合同结束后, 不得以任何理由将履行合同过程中所知悉的甲方的信息资产、保安事项、商业秘密及其他知识产权等 (以下简称为“商业秘密”) 用于私人目的及向公司内外的第三者泄露或公开。
2. 乙方决不接触甲方禁止接触的信息或设施, 严格遵守甲方的保安规定、指南及政策。
3. 甲方为了业务便利而提供给乙方的计算机ID、密码及出入证, 只能由乙方本人知道并使用, 决不公开或转让、出借他人使用。
4. 合同结束时乙方将移交甲方为了履行合同而提供给乙方的与商业秘密有关的一切资料, 且不私自保留与此相关的任何形态的副本。
5. 乙方承认在合同期间独自或与他人共同制作、开发、设计、发明的与业务相关技术与信息以及产品的相应所有权属于甲方。
6. 在合同期间乙方将严格遵守与甲方的商业秘密有关的各种规定及现行法令, 并积极协助甲方。
7. 如乙方有违反上述事项的行为, 合同可解除。

严格遵守上述事项，如因违反上述事项而给甲方造成的损失将由乙方依据防止不正当竞争及商业秘密保密的有关法律及相关法规进行赔偿，并负民事、刑事责任。

200 年 月 日

确认上述内容。

签约者所属公司(机构)：

公司注册号码：

公司代表人身份证号码

代表人姓名： (印章)

○ ○ ○ ○ 股份有限公司

## 営業秘密保護誓約書

(協力会社/企業用)

\_\_\_\_\_ (以下“乙”と称する)は、〇〇〇〇株式会社(以下“甲”と称する)との相互協力関係を維持していくことに当たり甲の営業秘密などの保持に関して以下のように誓約致します。

1. 乙及びその役員と職員(以下“乙など”と称する)は、契約期間中もしくは契約終了後においても契約中に契約の遂行の為に知得した甲の情報資産、保安事項、営業秘密及びその他の知的財産権など(以下“営業秘密”と称する)に関し如何なる理由であれ私的な目的で使用、会社内の第三者への漏洩、公開を致しません。
2. 乙などは、甲の事前許可を得ていない情報や施設などには絶対接近せず、甲の保安規程及び指針、政策などを必ず遵守致します。
3. 甲が乙の業務上の便宜を図って提供したパソコンのID及びパスワード、セキュリティ・カードなどは乙のみが使用し、絶対人に人に公開したり、貸与・譲渡致しません。
4. 乙は、契約終了の際、甲が業務遂行の為に提供した営業秘密に関するものが含まれている全ての資料を甲に返却し、それに関する如何なる写本も個人的に保有致しません。
5. 乙は、契約期間中業務と関連して独自の、または共同で作成、開発、設計、考案した技術や情報及びそれに準ずる産出物に対する所有権が甲に所属することを確認致します。
6. 乙などは、契約中甲の営業秘密保護と関連した甲の各種規程及び現行法令を徹底的に遵守し、それに協力致します。
7. 万一、上記の事項に違反する乙などがいた場合、それによって甲との契約が解約される場合があることを承知致します。



上記の事項を誠実に遵守致します。万一、上記の誓約事項に違反し、甲に損害を与えた場合には不正競争防止及び、営業秘密保護に関する法律及び関連法規に従い、甲に対する損害賠償とすべての民事・刑事上の責任を負うことを誓約致します。

200 年 月 日

上記内容を確認しここに署名致します。

誓約者の所属社(機関) :

事業者登録 No. :

代表取締役住所 :

代表取締役氏名 : \_\_\_\_\_ (職印)

○ ○ ○ ○ 株式会社

代表取締役 \_\_\_\_\_ 殿

## 영업비밀보호서약서

(협력업체-개인용)

\_\_\_\_\_ 본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갑의 영업비밀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약기간 중 계약 수행을 위하여 지득한 갑의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갑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 등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고 갑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 등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3. 갑이 을의 업무 편의를 위해 제공한 전산 ID 및 패스워드, 출입증 등은 을만이 알고 사용하였으며, 절대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대여·양도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계약 종료시 갑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갑에게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계약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작성,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권이 갑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6. 본인은 계약기간 중 갑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갑의 각종 규정 및 현행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에 협조하겠습니다.
7. 본인은 만일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해 갑과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위의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갑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갑에 대한 손해배상과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소            속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_\_\_\_\_(서명)

○ ○ ○ ○ 주식회사 귀중

## NON-DISCLOSURE AGREEMENT

(For employees at collaborative companies)

I make the following oaths in regard to the protection of \_\_\_A\_\_\_ company'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any") business secrets while I maintain the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1. I shall not use or disclose company's information asset, security information, business secrets and other intellectual asse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Secrets") acquired within a term of a contract or after the contract to a third party.
2. I shall not gain access to any information or facility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ompany and shall abide by company regulations, guidelines and policies on confidential information.
3. I shall not lend or transfer electronic ID, password, ID card provided from the company for business convenience to other people and shall abide by the company's regulations, guidelines and policies on confidential information.
4. I shall return all the material which contain business secrets provided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duties to the company and shall not retain any forms of duplicate.
5. I shall acknowledge that the company holds the ownership of technology, information and outputs developed (composed, designed and devised) with other people or individually during a term of a contract.
6. I shall abide by company's regulations and national laws regarding protection of business secrets.
7. I shall acknowledge that the contract can be cancelled when I infringes the above mentioned agreements.

I pledge that I will duly observe the above mentioned agreements and shall bear legal responsibility and compensate for the damages caused to the company for violating it according to the laws and company regulations on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

Date: . . .

Name of Organization:

Resident Registration No.: -

Name: \_\_\_\_\_(Signature)

To \_\_\_\_\_ Company

## 商业秘密保护协议书

(合作商-个人)

\_\_\_\_\_ (以下简称为“乙方”) 与○○○○股份有限公司 (以下简称为“甲方”) 在合作期间, 为了保守甲方的商业秘密等, 签订以下协议:

1. 本人在合同期间以及合同结束后, 不得以任何理由将履行合同过程中所知悉的甲方的信息资产、保安事项、商业秘密及其他知识产权等 (以下简称为“商业秘密”)用于私人目的及向公司内外的第三者泄露或公开。
2. 本人决不接触甲方禁止接触的信息或设施, 严格遵守甲方的保安规定、指南及政策。
3. 甲方为了业务便利而提供给乙方的计算机ID、密码及出入证, 只能由乙方本人知道并使用, 决不公开或转让、出借他人使用。
4. 合同结束时乙方将移交甲方为了履行合同而提供给乙方的与商业秘密有关的一切资, 且不私自保留与此相关的任何形态的副本。
5. 本人承认在合同期间独自或与他人共同制作、开发、设计、发明的与业务相关技术与信息以及产品的相应所有权属于甲方。
6. 在合同期间乙方将严格遵守与甲方的商业秘密有关的各种规定及现行法令, 并积极协助甲方。
7. 如乙方有违反上述事项的行为, 合同可解除。

严格遵守上述事项，如因违反上述事项而给甲方造成的损失将由乙方依据防止不正当竞争及商业秘密保密的有关法律及相关法规进行赔偿，并负民事、刑事责任。

200 年 月 日

确认上述内容。

所属：

身份证号码：

姓名：

(签订)

○ ○ ○ ○ 股份有限公司

## 営業秘密保護誓約書

(協力会社/個人用)

私、\_\_\_\_\_ (以下“乙”と称する)は、〇〇〇〇株式会社(以下“甲”と称する)との相互協力関係を維持していくことに当たり甲の営業秘密などの保持に関して以下のように誓約致します。

1. 乙は、契約期間中もしくは契約終了後にも契約中に契約の遂行の為に知得した甲の情報資産、保安事項、営業秘密及びその他の知的財産権など(以下“営業秘密”と称する) に関し如何なる理由があろうと、私的な目的で使用し、会社内の第三者に漏洩、公開を致しません。
2. 乙は、甲の事前許可を得ていない情報や施設などには絶対接近せず、甲の保安規程及び指針、政策などを必ず遵守致します。
3. 乙は、甲が乙の業務上の便宜を図って提供したパソコンのID及びパスワード、セキュリティカードなどは乙のみが使用し、絶対に人に公開したり、貸与・譲渡致しません。
4. 乙は、契約終了の際、甲が業務遂行の為に提供した営業秘密に関するものが含まれているすべての資料を甲に返却し、それに関する如何なる写本も個人的に保有致しません。
5. 乙は、契約期間中に業務と関連して独自の、または共同で作成、開発、設計、考案した技術や情報及びそれに準ずる産出物に対する所有権が甲に所属することを確認致します。
6. 乙は、契約中、甲の営業秘密保護と関連した甲の各種規程及び現行法令を徹底的に遵守し、それに協力致します。
7. 乙は、万一、上記の事項に違反した場合、それによって甲との契約が解約される場合があることを承知致します。



乙は、上記の事項を誠実に遵守致します。万一、上記の誓約事項に違反し、甲に損害を与えた場合には不正競争防止及び、営業秘密保護に関する法律及び関連法規に従い、甲に対する損害賠償とすべての民事・刑事上の責任を負うことを誓約致します。

200 年 月 日

上記内容を確認しここに署名致します。

所 属：

住 所：

氏 名： \_\_\_\_\_ (署名)

○ ○ ○ ○ 株式会社

代表取締役 \_\_\_\_\_ 殿

## 영업비밀보호서약서

(프로젝트 참여자용)

프로젝트명 :

프로젝트 기간 :

\_\_\_\_\_ 본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의 상기 프로젝트에 참여함에 있어 갑의 영업비밀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프로젝트 기간 중이나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지득한 갑의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 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갑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 등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고 갑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 등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3. 갑이 을의 업무 편의를 위해 제공한 전산 ID 및 패스워드, 출입증 등은 을만이 알고 사용하겠으며, 절대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대여·양도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프로젝트 종료시 또는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상기 프로젝트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갑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갑에게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프로젝트 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작성,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권이 갑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6. 본인은 프로젝트 기간 중 갑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갑의 각종 규정 및 현행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에 협조하겠습니다.
7. 본인은 만일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해 갑과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위의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갑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갑에 대한 손해배상과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소 속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_\_\_\_\_ (서명)

○ ○ ○ ○ 주식회사 귀중

## NON-DISCLOSURE AGREEMENT

(For participants to project)

Project Name :

Project Periods :

I make the following oaths in regard to the protection of \_\_\_A\_\_\_ company'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any") business secrets as I participate in the above mentioned project.

1. ABC shall not privately use or disclose BBC company's information asset, security information, business secrets and other intellectual asse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Secrets") acquired within a term of a project or after the project to a third party.
2. I shall not gain access to any information or facility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ompany and shall abide by company regulations, guidelines and policies on confidential information.
3. I shall not lend or transfer electronic ID, password, ID card provided from the company for business convenience to other people.
4. I shall return all the material which contain business secrets to the company and shall not retain any forms of duplicate when the project is finished or it reaches to a status where the project is no longer can be carried out.
5. I shall acknowledge that the company holds the ownership of technology, information and outputs developed (composed, designed and devised) with other people or individually during a term of the project.
6. I shall abide by company's regulations and national laws regarding protection of business secrets.
7. I shall acknowledge that the contract can be cancelled when I infringes the above mentioned agreements.

I pledge that I will duly observe the above mentioned agreements and shall bear legal responsibility and compensate for the damages caused to the company for violating it according to the laws and company regulations on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

Date: . . .

Name of Organization:

Resident Registration No.: -

Name: \_\_\_\_\_ (Signature)

To \_\_\_\_\_ Company

## 商业秘密保护协议书

(项目参与者)

项目名称：

项目期限：

\_\_\_\_\_ 本人（以下简称为“乙方”）与○○○○股份有限公司（以下简称为“甲方”）在参与上述项目期间，为了保守甲方的商业秘密等，签订以下协议：

1. 本人在参与项目期间以及合同结束后，不得以任何理由将履行合同过程中所知悉的甲方的信息资产、保安事项、商业秘密及其他知识产权等（以下简称为“商业秘密”）用于私人目的及向公司内外的第三者泄露或公开。
2. 本人决不接触甲方禁止接触的信息或设施，严格遵守甲方的保安规定、指南及政策。
3. 甲方为了业务便利而提供给乙方的计算机ID、密码及出入证，只能由乙方本人知道并使用，决不公开或转让、出借他人使用。
4. 项目结束后或因其他理由而不能再进行上述项目时，本人将移交甲方为了履行项目而提供给本人的与商业秘密有关的一切资，且不私自保留与此相关的任何形态的副本。
5. 本人承认在合同期间独自或与他人共同制作、开发、设计、发明的与业务相关技术与信息以及产品的相应所有权属于甲方。
6. 在合同期间乙方将严格遵守与甲方的商业秘密有关的各种规定及现行法令，并积极协助甲方。
7. 如乙方有违反上述事项的行为，合同可解除。

严格遵守上述事项，如因违反上述事项而给甲方造成的损失将由乙方依据防止不正当竞争及商业秘密保密的有关法律及相关法规进行赔偿，并负民事、刑事责任。

200 年 月 日

确认上述内容。

所属：

身份证号码：

姓名：

(签订)

○ ○ ○ ○ 股份有限公司

## 営業秘密保護誓約書

(プロジェクト参加者用)

プロジェクト名：

プロジェクト期間：

私、\_\_\_\_\_ (以下“乙”と称する)は、〇〇〇〇株式会社(以下“甲”と称する)の上記のプロジェクトに参加するに当たり甲の営業秘密などの保持に関して以下のように誓約致します。

1. 乙は、プロジェクト期間中もしくはプロジェクト終了後にもプロジェクトの遂行の為に知得した甲の情報資産、保安事項、営業秘密及びその他の知的財産権など(以下“営業秘密”と称する)に関し如何なる理由があろうと、私的な目的で使用、会社内の第三者への漏洩、公開を致しません。
2. 乙は、甲の事前許可を得ていない情報や施設などには絶対接近せず、甲の保安規程及び指針、政策などを必ず遵守致します。
3. 乙は、甲が乙の業務上の便宜を図って提供したパソコンのID及びパスワード、セキュリティ・カードなどは乙のみが使用し、絶対人に公開したり、貸与・譲渡致しません。
4. 乙は、プロジェクト終了の際、如何なる理由で乙が上記のプロジェクトをそれ以上遂行することが出来なくなった場合、甲が業務遂行の為に提供した営業秘密に関するものが含まれているすべての資料を甲に返却し、それに関する如何なる写本も個人的に保有致しません。
5. 乙は、プロジェクト期間中に業務と関連して独自の、または共同で作成、開発、設計、考案した技術や情報及びそれに準ずる産出物に対する所有権が甲に所属することを確認致します。
6. 乙は、プロジェクト中、甲の営業秘密保護と関連した甲の各種規程及び現行法令を徹底的に遵守し、それに協力致します。
7. 乙は、万一、上記の事項に違反した場合、それによって甲との契約が解約される場合があることを承知致します。



乙は、上記の事項を誠実に遵守致します。万一、上記の誓約事項に違反し、甲に損害を与えた場合には不正競争防止及び、営業秘密保護に関する法律及び関連法規に従い、甲に対する損害賠償とすべての民事・刑事上の責任を負うことを誓約致します。

200 年 月 日

上記内容を確認しここに署名致します。

所 属：

住 所：

氏 名： \_\_\_\_\_ (署名)

○ ○ ○ ○ 株式会社

代表取締役 \_\_\_\_\_ 殿

## 영업비밀보호서약서

(NOTE PC 사용자용)

\_\_\_\_\_ 본인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내에서 NOTE PC를 사용함에 있어 회사의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해서 지정된 업무수행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사용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NOTE PC에 대한 사용, 휴대, 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용 중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인은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자료도 사외로 절대 반출하지 않겠으며,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5. NOTE PC를 사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반출관련 정보이외의 모든 정보를 삭제하겠습니다. (단, 개인 OA용 PC로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함)
6. 본인은 NOTE PC 반출시 회사의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NOTE PC 검열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협조하겠습니다.
7. 본인은 NOTE PC 사용 중 입수한 본인 또는 타인의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8. 회사로부터 할당된 전산 ID 및 패스워드는 본인만 알고 사용할 것이며,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9. NOTE PC는 절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겠으며, 이에 따른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단, 출장용등 대여용으로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본인은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위의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NOTE PC 사양		사 용 자	
모 델 명		소 속	
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
사용용도		성 명	(서명)

○ ○ ○ ○ 주식회사 귀중

## NON-DISCLOSURE AGREEMENT

(For NOTE PC users)

I make the following oaths in regard to the protection of \_\_\_A\_\_\_ company'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any") business secrets as I use the company's NOTE PC.

1. I shall abide by \_\_\_A\_\_\_ company's regulation regarding protection of business secrets and shall bear responsibility for violating it.
2. I shall not divulge or disclose company's business secrets to a third party and shall not use it for any private purposes except for designated business use.
3. I shall take all possible measures to supervise the use of NOTE PC and shall bear responsibility for the disgraceful affairs.
4. I shall not take any forms of material in regard to company's business secrets out of the company and shall not personally retain any forms of duplicate.
5. In case of taking NOTE PC out of the company, I shall delete all the information which is not related to the purposes for carrying out. (However, it shall be permitted when using the NOTE PC for Office Automation)
6. I shall agree to receive NOTE PC inspection conducted by the company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company's business secrets.
7. I shall acknowledge that the company holds the ownership of technology, information and outputs developed (composed, designed and devised) with other people or individually while using the NOTE PC.
8. I shall not disclose electronic ID and password assigned to me from the company to other people.
9. I shall not lend or transfer NOTE PC to other people and shall bear responsibility for the outcomes when security concerns arise. (However, exception will be applied when there is a prior written consent from the company)

I pledge that I will duly observe the above mentioned agreements and shall bear legal responsibility and compensate for the damages caused to the company for violating them according to the laws and company regulations on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

Date: . . . . .

NOTE PC		User	
Model Name		Organization	
Serial No.		Resident Registration No.	-
Purpose of use		Name	(Signature)

To \_\_\_\_\_ Company

## 商业秘密保护协议书

(笔记本电脑使用者)

\_\_\_\_\_ 本人在○○○○股份有限公司（以下简称为“公司”）内使用笔记本电脑时为了保守公司的信息资产、保安事项、商业秘密及其他知识产权等（以下简称为“商业秘密”），签订以下协议：

1. 本人严格遵守与公司商业秘密有关的各种规定，并对此负责。
2. 公司的商业秘密除用于指定的业务以外，本人不以任何理由用于私人目的及向公司内外的第三者泄露或公开。
3. 本人对笔记本电脑的携带、使用、保管等将进行全面管理，并对使用过程中发生的所有事项负责。
4. 不经公司的允许本人决不将与公司商业秘密有关的任何形式的资料带出公司，且不自保留与此相关的任何形态的副本。
5. 将笔记本电脑携带出公司时，除必需带出的资料外必须删除其他所有关联资料。（个人办公用的笔记本电脑情况可除外）
6. 携带笔记本电脑外出时，本人同意进行保守公司商业秘密为目的的电脑检查，并对此积极配合。
7. 本人承认在使用电脑过程中所知悉的独自或他人的开发、设计、发明的技术与信息以及产品的相关所有权属于公司。
8. 对于公司提供的电算（计算机）ID及密码，只能由本人知道并使用，决不公开或转让、出借他人使用。
9. 本人决不把笔记本电脑转让、出借他人使用。对因转让、出借笔记本电脑而发生的保安问题，将负所有责任。（用于出差等出借的情况。如具有公司书面同意的情况可除外）

本人严格遵守上述事项，如因违反上述事项而给公司造成的损失将由本人赔偿损失，并负民事、刑事责任。

200 年 月 日

笔记本电脑		使用者	
型 号		所 属	
序列号码		身份证号码	
使用目的		姓 名	(签订)

○ ○ ○ ○ 股份有限公司

## 営業秘密保護誓約書

(ノート型パソコン使用者用)

私、\_\_\_\_\_は、〇〇〇〇株式会社(以下“貴社”と称する)内でノート型パソコンを使用することに当たって会社の情報財産、保安事項、営業秘密及びその他の知的財産権など(以下、“営業秘密”と称する)の保持に関して以下のように誓約致します。

1. 私は、貴社の営業秘密の保護に関する貴社の各種規程を徹底的に遵守し、それに対して責任を持ちます。
2. 私は、貴社の営業秘密に対し、指定された業務遂行を除いては如何なる理由であれ私的に使用、会社内の第三者への漏洩、公開を致しません。
3. 私は、ノート型パソコンの使用、携帯、保管など、全般的な管理に万全を期し、使用中発生した事項に対してすべての責任を負います。
4. 私は、貴社の許可無く貴社の営業秘密と関係のある如何なる資料の絶対社外へ持ち出しません。また、如何なる写本も個人的に保有致しません。
5. 万一、ノート型パソコンを社外へ持ち出す場合は、搬出と関連する情報以外のすべての情報を削除致します。(但し、個人OA用パソコンを使用する場合には例外とする。)
6. 私は、ノート型パソコンを持ち出す場合には、貴社が営業秘密の保護の為に使うノートパソコンの検閲に同意し、それに協力致します。
7. 私は、ノート型パソコンの使用中に手入した私、あるいは他人が開発・設計・考案した技術や情報及びそれに準ずる産出物に対する所有権が貴社に所属することを確認致します。
8. 貴社から割り当てられたパソコンのID及びパスワードは私のみが使用し、絶対人に漏洩、公開致しません。
9. ノート型パソコンは絶対人に貸与・譲渡致しません。また、それに関して保安上の問題が発生した場合には、全ての事項に対し責任を負います。(但し、出張用など貴社からの事前書面同意がある場合は例外とする。)



私は、上記の事項を誠実に遵守致します。万一、上記の誓約事項に違反し、貴社に損害を与えた場合には貴社に対する損害賠償とすべての民事・刑事上の責任を負うことを誓約致します。

200 年 月 日

ノート型パソコンの種類		使用者	
モデル名		所 屬	
シリアル No.		ID No.	—
使用用途		氏 名	(サイン)

○ ○ ○ ○ 株式会社

代表取締役 \_\_\_\_\_ 殿

##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전산매체등 사용자용)

\_\_\_\_\_ 본인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내에서 전산매체 등을 사용함에 있어 회사의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해서 지정된 업무수행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사용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회사에서 허가한 기기에 대한 사용, 휴대, 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용 중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인은 기기별 하기 보안 수칙을 준수하겠습니다.
  - ① USB 메모리, FD Drive, CD/DVD RW : 용도 외 Write 금지, 반출시 반출증 제시, 매월 사용실적 제출, 관리대장의 성실한 기록관리
  - ② HDD : ①항과 동일하나, 반출이 불가하며 시건장치가 된 곳에 보관
5. 본인은 회사에서 허가한 기기라도 회사의 허가 없이 영업비밀과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자료도 사외로 절대 반출하지 않겠으며,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본인의 전산매체 검열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협조하겠습니다.
7. 본인은 기기 사용 중 입수한 본인 또는 타인의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8. 본인은 기기를 절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겠으며, 이에 따른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위의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사용기기		사 용 자	
모 델 명		소 속	
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
사용용도		성 명	(서명)

○ ○ ○ ○ 주식회사 귀중

## NON-DISCLOSURE AGREEMENT

(For electronic device users)

I make the following oaths in regard to the protection of \_\_\_A\_\_\_ company'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any") business secrets as I use the company's electrical devices.

1. I shall abide by and bear responsibility for company regulations in regard to the protection of business secrets.
2. I shall not divulge or disclose company's business secrets to a third party and shall not use it for any private purposes except for designated business use.
3. I shall take all possible measures to supervise the use of electrical devices and shall bear responsibility for the disgraceful affairs.
4. I shall observe the follow instructions
  - ① I shall not write on USB memory stick, FD Driver, CD/DVD RW for other purposes except for the given duties. I shall present a written permission when carrying out them and shall document and submit past records for using them.
  - ② The same restrictions as ① will be applied to HDD. Additionally, HDD will not be taken out from the company and it has to be preserved with the doors locked.
5. I shall not take any forms of material in regard to company's business secrets out of the company and shall not personally retain any forms of duplicate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ompany.
6. I shall agree to receive inspection for electrical devices conducted by the company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company's business secrets.
7. I shall acknowledge that the company holds the ownership of technology, information and outputs developed (composed, designed and devised) with other people or individually while using the electrical devices.

8. I shall not lend or transfer the electrical devices to other people and shall bear responsibility for the outcomes when security concerns arise.

I pledge that I will duly observe the above mentioned agreements and shall bear legal responsibility and compensate for the damages caused to the company for violating them according to the laws and company regulations on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

Date: . . . .

Name of device		User	
Model Name		Organization	
Serial No.		Resident Registration No.	-
Purpose of use		Name	(Signature)

To \_\_\_\_\_ Company

## 商业秘密保护协议书

(电子媒体产品)

\_\_\_\_\_ 本人在○○○○股份有限公司（以下简称为“公司”）内使用电子媒体产品时为了保守公司的信息资产、保安事项、商业秘密及其他知识产权等（以下简称为“商业秘密”），签订以下协议：

1. 本人严格遵守与公司商业秘密有关的各种规定，并对此负责。
2. 公司的商业秘密除用于指定的业务以外，本人不以任何理由及私人目的向公司内外的第三者泄露或公开。
3. 本人对公司使用的电子媒体产品在携带、使用、保管等将进行全面管理，并对使用过程中发生的所有事项负责。
4. 本人将遵守如下有关机器使用的保安规定。
  - ① USB硬盘, FD Drive, CD/DVD RW: 使用规定用途以外决不复制、带出时出示携物出门单、每个月提交使用业绩、如实记录管理账簿
  - ② HDD: 同1)项，但不可携带出，且在具备安全设施的地方保管
5. 对于已经得到公司使用允许的电子媒体产品，如无公司的许可决不将与公司商业秘密有关的任何形式的资料带出公司，且不私自保留与此相关的任何形态的副本。
6. 携带电子媒体产品外出时，本人同意进行保守公司商业秘密为目的的检查，并对此积极配合。
7. 本人承认在使用电子媒体产品过程中所知悉的独自或他人的开发、设计、发明的技术与信息以及产品的相关所有权属于公司。
8. 本人决不把电子媒体产品转让、出借他人使用。对因转让、出借电子媒体产品而发生的保安问题，将负所有责任。

本人严格遵守上述事项，如因违反上述事项而给公司造成的损失将由本人赔偿损失，并负民事、刑事责任。

200 年 月 日

使用机器		使用者	
型 号		所 属	
序列号码		身份证号码	
使用目的		姓 名	(签订)

○ ○ ○ ○ 股份有限公司

## 営業秘密保護誓約書

(パソコンなどの使用者用)

私、\_\_\_\_\_は、〇〇〇〇株式会社(以下“貴社”と称する)内でパソコンなどを使用することに当たって貴社の情報財産、保安事項、営業秘密及びその他の知的財産権など(以下、“営業秘密”と称する)の保持に関して以下のように誓約致します。

1. 私は、貴社の営業秘密の保護に関する会社の各種規程を徹底的に遵守し、それに対して責任を持ちます。
2. 私は、貴社の営業秘密に対し、指定された業務遂行を除いては如何なる理由であれ私的に使用、会社内の第三者への漏洩、公開を致しません。
3. 私は、貴社が許可した機器に関しての使用、携帯、保管など、全般的な管理に万全を期し、使用中発生した事項に対して一切の責任を負います。
4. 私は、機器ごとに下記の保安のための規則を遵守致します。
  - ① USBメモリ、FD Drive、CD/DVD RW：用途以外のWrite(書込み)禁止、持ち出しの際の搬出証の提示、毎月の使用実績の提出、管理台帳の記録管理
  - ② HDD：①の項目と同様。但し持ち出し不可で施錠装置のある場所に保管
5. 私は、貴社が使用を許可した機器であっても、貴社の許可無く営業秘密と関係のある如何なる資料も絶対社外へ持ち出しません。また、如何なる写本も個人的に保有致しません。
6. 私は、貴社が営業秘密の保護の為にを行う私のパソコンの検閲に同意し、それに協力致します。
7. 私は、機器の使用中に手入した私、あるいは他人が開発・設計・考案した技術や情報及びそれに準ずる産出物に対する所有権が貴社に所属することを確認致します。
8. 私は、機器を絶対人に貸与・譲渡致しません。また、それに関して保安上の問題が発生した場合には、全ての事項に対し責任を負います。



私は、上記の事項を誠実に遵守致します。万一、上記の誓約事項に違反し、貴社に損害を与えた場合には貴社に対する損害賠償とすべての民事・刑事上の責任を負うことを誓約致します。

200 年 月 日

使用機器		使用者	
モデル名		所 屬	
シリアル No.		ID No.	—
使用用途		氏 名	(サイン)

○ ○ ○ ○ 株式会社

代表取締役 \_\_\_\_\_ 殿

## 공동연구개발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본 공동연구개발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과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_\_\_\_\_에 관한 연구개발(이하 “본 공동연구”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연구성과”라 함은 본 공동연구의 결과로 발생한 각종 기술 문서, 연구 기자재, 연구 보고서, 연구 시설, 부속품, 시제품, 필름, 반도체 설계도, 사용 지침서 등과 지적재산권, 노하우, 기타 연구 결과물 등을 총칭한다.
- ②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에서 규정하는 각 권리와 외국에서 상기 각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 및 비밀로 관리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영업정보(이하 “노하우”라 한다) 등을 총칭한다.
- ③ “제3자”라 함은 “갑”, “을”을 제외한 다른 일방을 말한다.

제3조(공동연구의 범위) 본 공동연구의 대상, 범위, 내용, 방법 및 목표는 첨부 계획서와 같다.

-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하며, 본 기간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는 본 계약 종료 후 ○○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제5조(정보 등의 교환) ① “갑”과 “을”은 본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노하우를 상호 무상으로 제공·공개한다. 단, 제3자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갖는 정보는 제외한다.
- ② “갑”과 “을”은 제1항에 의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노하우를 본 공동연구 종료 또는 중지 후 상대방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용도제한) ① “갑”과 “을”은 본 공동연구와 관련하여 지득하거나 제

공 또는 개시받은 상대방의 노하우를 제3자에게 공개·누설하지 못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제1항에 의해 상대방에게 공개한 노하우를 본 공동연구에만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단, 서면에 의한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 소속 관계 직원들에게 한정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관계 직원에게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 그 사본과 함께 자신의 영업비밀보호규정 및 그 규정을 관계 직원에게 공람한 결과를 상대방에게 제출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비밀유지의무는 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지로 될 때까지 유효하다.

제7조(공동연구의 수행) ① “갑”과 “을”은 본 첨부계획서에 따라 분담된 연구개발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본 첨부계획서상의 연구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상대방이 관리하는 연구비품 및 공작물 등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연구비의 부담 및 납입) ① 본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갑”과 “을”은 각각 ○○만원, ○○만원씩 연구개발비를 부담한다.

② “갑”과 “을”은 각자의 연구개발비를 첨부계획서 상의 부담금 납입 일자에 따라 지정된 은행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추가 연구개발비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금을 변경 할 수 있다.

제9조(연구 인력 및 책임자) ① “갑”과 “을”의 협의 하에 본 계약 연구를 위한 인력 및 책임자를 정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재협의하여 정한다.

②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공동 연구비의 집행 및 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첨부계획서에 따라 연구비 집행 및 관리를 하고 집행 내역을 매분기별로 서면보고하도록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제1항의 집행실적에 대한 세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진척사항의 보고) ① “갑”과 “을”은 본 연구기간 중 정기적으로 연구진행 상황 등을 상호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② 점검회의의 방법과 절차 및 시기는 “갑”과 “을”의 연구책임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제3자와의 연구금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연구와 동일 목적의 연구를 본 공동연구기간 동안 제3자와 공동하여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부터 수탁할 수 없다.

② 제3자를 본 공동연구에 참가시키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갑”과 “을”은 제8조에서 정한 자기의 연구분담비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연구 성과물의 귀속) ① 연구 결과 발생한 연구 성과물은 “갑”과 “을”의 연구비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년간 본 연구의 성과와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권리 및 당해 권리에 의거하여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귀속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갑”과 “을”의 종업원들이 공동으로 발명한 것에 대한 권리는 연구비 부담비율에 따라 양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2. “갑”과 “을”의 일방의 종업원만이 실시한 발명 등에 대한 권리는 해당 당사자의 단독소유로 한다.

③ 상기 성과물에 대해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량, 개선한 결과물은 독자 개발한 일방당사자가 소유권을 가지며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상 실시권을 허여한다.

④ 일방당사자가 연구 성과물을 학술회의 또는 간행물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공개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특허출원 등 권리화) ① “갑”과 “을”은 제13조에 따른 공동소유의 연구 성과물을 특허출원 등을 통해 권리화 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에 의한 권리화 및 권리유지 절차를 진행하며, “을”은 이에 협력한다.

③ 제2항의 권리화 및 권리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소유지분에 따라 공동 부담한다.

④ “갑” 또는 “을”이 규정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지분은 그때부터 소멸하며, 해당지분은 “을” 또는 “갑”에게 양도한다.

⑤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한 지적재산권을 제3자가 침해할 경우 서로 협력하여 해결을 도모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개량발명 등) ① “갑”과 “을”이 본 계약의 유효기간 종료 후 ○○년 이내에 본 연구의 성과와 관련된 개량발명 또는 고안 등을 하여 특허출원 등을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문서로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 “을” 또는 “갑”은 그 때마다 협의하여 해당 개량발명 등의 취급에 대해 결정한다.

제16조(연구 성과물의 실시) ① “갑”과 “을”은 연구 성과물에 대해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각각의 자회사 포함)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으며, 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쌍방이 협의하여 실시의 가부 및 그 조건 등을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3자에게 실시권이 허락되어 취득한 실시료는 “갑”과 “을”의 소유지분에 따라 배분한다.

제17조(성과의 발표)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또는 그 종료 후 본 연구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게 될 경우 그 내용과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승낙을 받도록 한다.

제18조(계약상의 지위 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다른 일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계약의 변경) 본 공동연구개발 계약서의 내용 중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제20조(손해 배상책임) ① “갑”과 “을” 중 일방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제8조 연구비 부담에서 정한 기한 내에 부담금 지급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의 연체 이자율에 의한 별도 연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면제)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할 법적인 권리가 있음을 보증한다. 단, “갑”과 “을”은 본 공동연구로 어떤 특정한 연구 결과가 달성될 것이라든지 또는 연구 결과의 전부나 일부분이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 일방의 특허, 기술정보, 프로그램, 개량, 기보유정보 및 기보유특허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품질, 이익 또는 제조비를 보증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손상 또는 인적 상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 중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일간의 기간을 두고 시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불이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해지통보 없이 즉시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일방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 및 성과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2. 일방당사자의 주요 재산이 압류, 강제화의, 회사정리 절차 개시, 폐업, 휴업, 파산 등 중요한 변동이 생겨 본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정부 또는 정부기관의 행위, 법률/규칙/명령의 준수, 화재, 폭풍, 홍수, 지진, 반란, 혁명, 폭동, 파업 또는 공장폐쇄 등 일방이 지배할 수 없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계약의 이행이 3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 및 첨부계획서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의 해석상 의미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신의 성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의해 공동연구를 함에 있어서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서 및 첨부 계획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의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계약의 분리가능성) ① 관련 법령이나 판결에 의해 본 계약 내용 중 일부가 무효처리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계약내용은 유효하다.

② 본 계약서에 첨부된 별첨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하되, 분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현행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의견 차이는 관련 국내법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중재인(들)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당사자 쌍방에 구속력을 가진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두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한 후 각 한통씩 보관한다.

첨 부 : 공동연구개발 계획서 1부

2000년 00월 00일

“갑”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성 명 : \_\_\_\_\_ (직인)

“을”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성 명 : \_\_\_\_\_ (직인)

## 투자유치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투자유치 및 M&A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을 의뢰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_\_\_\_\_분야의 전문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국내의 투자를 원활하게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투자자”라 함은 “갑”의 사업계획에 부응하는 개인, 회사 또는 정부기관으로서 일정한 조건 하에 “갑”에게 투자를 행하거나 행할 예정인 자를 포괄적으로 칭한다.
- ② “투자의 유치”라 함은 “갑”의 사업화를 위하여 자금의 대여, 금전출자, 현물출자 등 모든 형태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문의 제공) ①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게 제5조 제1항의 자문을 제공한다.

②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제1조의 목적수행과 관련하여 제5조의 “을”의 역할과 중복되거나 “을”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권한을 제3자에게 수여하거나 혹은 투자유치자문 등의 용역을 제3자에게 의뢰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의 동의하에 투자자(회사인 경우 그 임직원 또는 주주를 포함)와 직접 접촉하며 모든 의사전달은 “을”을 통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갑”의 역할) “갑”은 “을”이 “을”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화와 관련된 내부전략수립, 자금조달방안, 주요단계별 주요의사결정, “갑”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인 정보를 포함한 각종 내·외부 정보를 “을”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5조(“을”의 역할) ①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을”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1. 투자자의 소개 및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및 이에 대한 분석 지원
2. 투자유치 관련 각종 계약 검토 및 계약 체결 자문
3. M&A에 관한 자문
4. M&A 관련 각종 계약 검토 및 계약 체결 자문
5. 필요시 외부 전문가 고용



## 6. 기타 별도로 “갑” 과 “을” 사이에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정한 사항

② “을”이 제1항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갑”의 동의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비밀유지 의무)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상호간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는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사업화와 관련한 투자의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년간 그에 따른 비밀을 제3자에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상의 비밀 준수를 요하는 관련 자료는 “갑”과 “을”, 투자자의 명칭, “갑”이 사업화와 관련하여 투자의 유치를 의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며, 상호 제공된 문서와 자료, 투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계획 및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제7조(면책) ① “갑”은 “을”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하여 야기되지 않는 한 “을”이 “갑”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행위 및 기타 “을”이 “갑”을 위하여 행한 행위로부터 발생하거나 근거되어 청구되는 모든 책임 및 손해로부터 “을”을 면책한다.

② “을”은 “갑”을 위하여 “갑”이 최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기타 용역을 제공하며, 투자의 유치 및 사후관리와 관련한 모든 판단은 “갑”의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 “갑”의 결정에 근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모두 “갑”에게 귀속한다.

제8조(수수료) ① “갑”은 “을”에게 금 한글기입 원정(₩ 숫자기입 원)의 착수금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본 계약의 성사나 중도해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② “을”의 자문에 의하여 “갑”이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을”에게 투자유치금액의 ○○%에 해당하는 현금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한다. 단,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성공보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갑”은 외자유치, M&A용 실사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을”이 제3자를 고용할 때 “을” 및 제3자와 사전협의 하에 비용을 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갑”은 “을”에게 외부전문가 고용에 대한 보수와 출장비 및 기타 경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⑤ 정부사업,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도 본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 출연금의 총규모를 투자유치금액으로 본다.

⑥ “을”의 자문에 의하여 “갑”이 M&A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을”에게 금 한글기입 원정(₩ 숫자기입 원)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한다.

⑦ 제2항과 제4항 및 제6항의 금액에 대해 “갑”은 “을”의 청구를 받는 날로부터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계좌로 납입한다.

제9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년간 유효하다. 단,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제10조(신의성실의 의무)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본 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하되, 분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현행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두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한 후 각 한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갑”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성 명 : \_\_\_\_\_ (직인)

“을”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성 명 : \_\_\_\_\_ (직인)

## 라이선스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실시자”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허락자”라 한다)는 “허락자”가 개발한 \_\_\_\_\_ 기술을 “실시자”가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계약기술”이란 현재 “과기연”이 특허출원한 “\_\_\_\_\_”(대한민국 특허출원 제○○호/○○) 중 “\_\_\_\_\_”기술을 말한다. 단, 출원중인 산업재산권이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실시자”는 본 계약상의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계약제품”이라 함은 “계약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 및 생산장치를 말하고, 중간체 또는 원료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중간체나 원료를 말하며, “계약기술”이 공정(공정개선 또는 공정대체를 포함)을 최종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공정(개선된 공정, 대체된 공정 포함)을 말한다. 단, 1개의 생산제품에 2개 이상의 산업재산권이 관련되는 경우 1개의 계약제품으로 본다.
- ③ “실시” 또는 “실시권”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에서 “계약기술”을 사용하는 행위 및 권리
  2. 국내에서 “계약기술”을 사용하여 “계약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및 권리
  3. “실시자”가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계약제품”을 생산하는 행위
  4. 기타 위의 각 호를 위한 활동
- ④ “생산개시”라 함은 “실시자”가 “계약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제품”을 최초로 생산한 것을 말하며 그 해당일을 “생산개시일”이라 한다.
- ⑤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제38조에서 정의된 매출액을 말한다.
- ⑥ “개량기술”이라 함은 “계약기술”의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발명에 의한 기술을 말한다.
- ⑦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란 “허락자”가 “실시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할 수 없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제2조(실시권의 내용) ① “허락자”는 “실시자”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계약기술”을 실시하는데 동의하여 “실시자”에게 \_\_\_\_\_ 실시권을 설정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다.

② “실시자”는 제3자와 “계약기술”의 전부나 일부를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기술”의 이전이나 증여, 통상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등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허락자”는 “실시자”가 “계약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조(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계약제품”을 판매하거나, “계약기술”을 수출하는 것(동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하며, “실시자”가 “계약기술”을 “국외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허락자”와 협의하여 본 계약과는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기간) ① “실시자”의 “계약기술” 실시기간은 “생산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년이 되는 연말에 만료되는 것으로 하되, “생산개시일”이 해당년도 6월 30일 이후로 확정되는 경우 익년도 1월 1일로부터 실시기간을 기산한다.

② “실시자”는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생산개시”를 하여야 하며, 생산을 개시한 즉시 “생산개시일”을 서면으로 “허락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생산개시”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허락자”의 서면동의를 득한 후 이를 연기하되, “생산개시”의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총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실시대가) “실시자”는 다음과 같이 실시료를 “허락자”에 지급한다. 단, 본 조항은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실시자”가 “계약기술”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①(선급실시료) “실시자”는 본 계약체결시 선급실시료로 금 한글기입 원정(₩ 숫자기입 원)을 “허락자”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경상실시료) “실시자”는 경상실시료로 “생산개시일”로부터 본 계약 만료일까지 매년 본 “계약제품” “매출액”의 ○○%를 제6조에 의거 “허락자”에 지급한다.

③(최저 실시료 계산) 제2항 경상실시료의 최저실시료는 금 한글기입 원정(₩ 숫자기입 원)으로 하며, 연도별 실시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경상실시료가 최저실시료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실시료를 경상실시료로 간주한다.

제6조(실시료 계산) “실시자”는 본 계약서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실시 대가를 다음과 같이 “허락자”에 지급한다.

①(계산분기) “실시료” 계산은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분기로 하여 당해 실시료를 익년도 3월말까지 “과기연”에 지급한다. 단, “생산개시일”이 생산개시 당해연도의 6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는 익년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자료제시) “실시자”는 실시료의 지급시 관련 세무자료 등 공인된 실시료 산출근거를 “허락자”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지급지연) “실시자”가 제5조 각 항의 실시료 지불을 지연하는 경우 “실시자”는 해당연도 지정된 은행의 당좌대월금리 이자를 일수별로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허락자”에 지불하여야 한다.

④(확인) “실시자”는 세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회계기록, 장부 및 “계약기술”의 실시유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허락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고, “실시자”의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시자”의 회계상 오류 등으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즉시 “허락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허락자”에게 기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오류 등으로 발생한 차액이 〇〇% 이상인 경우 검사를 위한 제반비용은 “실시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제7조(기술실시) ①(기술실시 협의) “허락자”와 “실시자”는 “계약기술”의 실시 및 “계약제품”의 설계, 제조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기술지도기간, 방법 등의 기술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②(비용 부담) “실시자”는 제1항의 협의에 따라 기술실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별도로 부담한다.

제8조(기술의 개량) ①(산업재산권의 취득) “허락자”가 “계약기술”으로써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경우 “실시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실시권을 가진다. 단, 산업재산권의 출원, 보정, 등록, 유지, 실시권 설정 및 명의이전 등 산업재산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계약체결이전에 기투입된 비용 포함)은 “실시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②(실시자의 기술개량) “실시자”또는 “실시자”의 임원 및 피용자가 “계약기술”을 개량 하고자 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자”는 사전에 “허락자”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취득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비독점실시권을 “허락자”에게 허락한다.

제9조(신의성실의 의무) ①(신의성실)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허락자”는 신의 성실을 다하여 “실시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실시자” 또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자료제출) “실시자”는 본 계약체결이후 〇〇월 이내에 “계약기술”의 상세한 상업화 계획을 “허락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이후 본 계약만료일까지 매 1년마다 연구, 기술개량, 상업화 진전사항 및 기타사항을 서면으로 “허락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기술 보증면제) ① “허락자”는 “실시자”가 실시하는 “계약기술”이 제3자

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술"의 실시에 의하여 "실시자"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실시료 지불을 포함하는 "실시자"의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허락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허락자"는 "계약기술"의 특허 출원, 등록 또는 유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② 제3자가 "계약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하는 사실이 있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허락자"와 "실시자"는 상호간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한다. 단,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실시자"가 더 이상 "계약기술"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며, 제14조 제2항에 따른다.

③ "실시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기술"의 효력을 다툰 경우 "허락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보장) ① "실시자"는 "계약기술"이 타에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의무는 그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②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실시자"와 "허락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허락자"는 다음의 경우에 30일의 기한을 두고 "실시자"에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유보하며, 이에 따라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허락자"는 기지급 받은 금액(기영수 약속어음 금액 포함)을 환불하지 아니하며, "실시자"는 기술 자료를 "허락자"에 반환하고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1. 통보기한 내에 "생산개시일"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생산개시일" 전이라도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생산개시일" 이후 "실시자"가 조업중단 등으로 실시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실시자"가 제5조에 따른 실시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치 아니할 경우

4.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 ② 본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10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실시자”는 해지 일까지의 실시료를 계산하여 “허락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계약해지시에 실시료 지불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재고품 및 “계약제품”에 대하여는 위의 계약해지일으로써 이미 판매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며, “실시자”는 이에 대한 실시료를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황보고와 함께 “허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실시자”는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계약기술”을 실시토록 하거나, 본 계약제품의 생산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손해 배상) “실시자”는 본 계약을 위반하여 “허락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중요사항의 변경) “실시자”가 본 계약체결 후 법인의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허락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허락자”의 착오는 “실시자”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17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허락자”와 “실시자”는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8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② 이 계약은 “허락자”와 “실시자”간 기술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전에 “허락자”와 “실시자”간의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 또한 이계약과 관련 있는 다른 협의나 계약은 이 계약서에 언급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권한 있는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제19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의 해석상 의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두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한 후 각 한통씩 보관한다.

- 첨 부 :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용인감계 1부(해당하는 경우)

2000년 00월 00일

“실시자”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성 명 : \_\_\_\_\_ (직인)

“허락자”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성 명 : \_\_\_\_\_ (직인)



## 제조위탁계약서

계약과제명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금 한글기입 원정(₩ 숫자기입 원)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위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목표 및 범위) 본 연구의 목표 및 범위는 첨부연구계획서상의 것과 같다.

제2조(연구수행) “을”은 “갑”과 협조하여 본 연구를 첨부연구계획서에 따라 위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비 지급)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비를 지급한다.

- ① 선급금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금 한글기입 원정(₩ 숫자기입 원))
- ② 중도금 및 잔금 : 중간연구보고서 제출이후 계약금액의 ○○%(금 한글기입 원정(₩ 숫자기입 원))

제4조(계약의 변경) 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첨부연구계획서의 내용 및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을”은 연구수행 중 연구계획 변경 및 연구기관 연장 등의 사유로 계약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 ○○개월 전까지 “갑”에게 요청하고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비의 사용 및 관리) ① “을”은 “갑”이 지급한 연구비를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본 연구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초 계획된 연구비 중에서 각비목별 20%(인건비, 연구간접경비 제외) 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연구기간 종료 ○○개월 전까지 “갑”에게 승인요청을 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을”은 잔금 청구시 당초 예산(계약금액)대 연구비 집행 실적을 “갑”이 정한 서식에 의거 연구비 집행 총괄표와 세부집행내역으로 구분

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갑의 명기요청이 있을 경우)

제7조(연구결과 보고 및 평가) ① “을”은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보고서 양식은 “갑”이 지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중간보고서 : ○○부, 20○○년 ○○월 ○○일 까지
2. 최종보고서 : ○○부, 20○○년 ○○월 ○○일 까지

② “을”은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대한 관련 기술을 “갑”에게 성실히 전수하여야 한다.  
③ “갑”은 연구결과에 대하여 속히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갑의 명기요청시)

제8조(연구평가 결과) “갑”은 “을”이 수행한 연구내용(중간 및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평가결과가 불량 이하일 때 그 정도에 따라 사유서 징구, 과제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② 과제중단 또는 제한할 경우의 연구비 정산은 10조 제2항에 따른다.(갑의 명기요청이 있을 경우)

제9조(지적재산권 및 발생품) ① “을”은 본 연구수행 중 획득한 모든 자료를 연구종료와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연구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 및 지적재산권 노하우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갑”의 소유로 한다.

② “을”은 본 연구수행 중 특허 및 지적재산권 출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출원비용은 “갑”이 부담토록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의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항을 위배하였을 때
2. “을”의 태만으로 소정의 기일 내에 연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을”이 연구수행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진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때, 또는 연구를 계속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갑”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 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5. “을”이 “갑”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취소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② “을”은 본 계약이 해약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기수령한 금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제1항의 제3호, 제4호의 사유로 해약될 경우 “을”은 해약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정산서 및 연구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의 보장) “을”은 본 위탁연구 수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한다. 단, “을”의 일반적인 연구나 동종의 연구 활동을 위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상호협조) “을”은 연구수행 중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 또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두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한 후 각 한통씩 보관한다.

첨 부 : 연구계획서 1부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갑”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성 명 : \_\_\_\_\_ (직인)

“을”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성 명 : \_\_\_\_\_ (직인)

대 표 자 성 명 : \_\_\_\_\_ (직인)

## 인수합병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주식회사(이하 “신회사”라 한다)를 설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합병과 신회사의 설립) “갑”과 “을” 양사는 합병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고 각각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신회사) 합병에 의해 설립한 신회사의 목적, 상호, 주식발행 총수, 새 주식 인수권 등을 정하고, 액면 주식 한 개당 금액,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과 본점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① 목적

1. \_\_\_\_\_ 제조
2. \_\_\_\_\_ 판매
3. 전 항을 대체하는 일련의 사업

② 상호 \_\_\_\_\_ 주식회사

③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_\_\_\_\_ 주

④ 액면주식의 한 주당 금액 \_\_\_\_\_ 원

⑤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량

1. 보통주식 \_\_\_\_\_ 주
2. 우선주식 \_\_\_\_\_ 주(우선주식은 \_\_\_\_\_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⑥ 당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를 승인받아야 한다.

⑦ 본 점의 소재지는 \_\_\_\_\_로 한다.

제3조(합병비율) 신회사는 합병에 있어서 액면 주식 \_\_\_\_\_주를 발행하고 이것을 합병기일 현재의 “갑”과 “을” 양사의 주주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은 비율로 교부하도록 한다.

① “갑” 회사는 주주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액면 \_\_\_\_\_원의 주식 1주당 1주의 비율

② “을” 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액면 \_\_\_\_\_원의 주식 2주당 1주의 비율

제4조(자본 및 자본준비금) 신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 준비금은 다음과 같다.

- ① 자본액 : 금 \_\_\_\_\_ 원
- ② 자본준비금액 : 금 \_\_\_\_\_ 원
- ③ 이익준비금액 : 금 \_\_\_\_\_ 원
- ④ 임의준비금액 : 금 \_\_\_\_\_ 원

제5조(교부금지급) “갑” 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1주당 금 \_\_\_\_\_ 원의 비율의 교부금을 합병시 지급한다.

제6조(합병기일) 합병기일은 2000년 00월 00일로 한다. 단, 이 기일 내에 합병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곤란한 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과 “을” 양사의 대표자 협정에 의해 이를 연장시킬 수 있다.

제7조(자산의 인수) “갑”과 “을” 양사는 2000년 00월 00일 현재의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등 동일의 계산을 기초로 해서 이후 합병일까지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합병기일에는 “갑”, “을” 양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및 채무 외의 영업권에 관한 영업의무 일체를 신회사가 인수한다.

제8조(이익금처분) “갑”과 “을” 양사의 2000년 00월 00일 현재 마감 결산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금 처분과 관련해서는 “갑”과 “을” 양사간의 협의에 의해 종래의 관례에 따라 정한다.

제9조(신주의 배당) 제3조에 의해 발행한 주식에 대한 배당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기산한다.

제10조(종업원인수) “갑”과 “을” 양사의 종업원은 전원 신회사에 인수되며 근속연수를 통산한다.

제11조(주주총회) “갑”과 “을” 양사는 2000년 00월 00일 각각 주주총회를 열어 본 계약의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결의를 한다.

제12조(설립위원, 설립총회의 개최시기) ① “갑”과 “을” 양사는 신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정관작성 외에 기타 행위를 위해 각각 00명의 설립위원을 선임한다.

② “갑”과 “을” 양사는 합병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마치고, 2000년 00월 00일에 신회사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① 양당사자 사이에 M&A의 전략팀을 구성하는 근로자는 M&A 업무 취급 중에 알게 된 양당사자의 중요한 경영 및 기술상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만일 계약당사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미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제14조(기타)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있어서도 합병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합병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과 “을” 양사 대표자의 협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효력의 발생시기) 본 계약은 제1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갑”과 “을” 양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음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휘한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두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한 후 각 한통씩 보관한다.

2000년 00월 00일

“갑”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성 명 : \_\_\_\_\_(직인)

“을”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성 명 : \_\_\_\_\_(직인)

## 합작투자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주식회사(이하 “합작투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일방당사자의 “계열사”라 함은 소유, 계약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당사자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당사자의 지배를 받거나 또는 그 당사자와 함께 공동으로 지배를 받는 회사, 단체 및 기타 사업체를 말한다.
- ② “정부의 승인”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한민국정부의 모든 승인을 말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당사자들에 의한 한국의 주식회사 형태로서의 합작투자회사의 설립·소유 및 운영을 규정함에 있다.

제3조(합작투자회사) ① 당사자들은 본 합작투자를 수행키 위해 필요한 모든 정부의 승인을 받는 즉시,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데 협력한다.

② 합작투자회사의 정관은 합작투자회사의 설립 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바에 의하며, 만일 본 계약과 합작투자회사의 정관 사이에 불일치가 있으며, 당사자들은 한국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작투자회사의 정관을 본 계약에 따라 수정한다.

제4조(주식인수) ①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사자들은 합작투자회사의 설립을 위해 필요하한 모든 절차를 밟는다. 합작투자회사의 설립시 “갑”은 주당 액면가 \_\_\_\_\_원인 보통주의 50%를, “을”은 위 보통주의 50%를 각각 인수하기로 약정하며, 그 주식수는 다음과 같다.

1. “갑” : 액면가로 \_\_\_\_\_주
2. “을” : 액면가로 \_\_\_\_\_주

본조에 따른 주식인수가 완료된 때의 합작투자회사의 총 수권주식수는 \_\_\_\_\_주 로 한다.

② 본 계약 당사자들이 서면에 의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갑”과 “을” 및 그들의 각 승계인은 합작투자회사가 존속하는 한 합작투자회사의 보통주를 다음과 같은 비율로 보유한다.

1. “갑” : 50%

2. “을” : 50%

③ “갑”과 “을”이 인수한 주식들을 주권 발행 전에 합작투자회사에 전액 현금으로 납입되어야 한다. “을”의 납입은 실제 납입일의 환율에 따라 계산된 원화 금액에 상당하는 \_\_\_\_\_ 원으로 한다.

④ 합작투자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주식은 보통주 일종으로 하며, 기명식 주권으로 발행한다.

⑤ “갑”과 “을”의 사전 서면동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작투자회사의 수권 주식이나 발행주식은 증가할 수 없다.

제5조(비용) 합작투자회사의 설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합작투자회사가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것이 아닌 한, 본 계약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단, 여행비용, 법률비용 등 합작투자회사의 설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서 각 당사자가 지는 비용은 그 비용을 발생시킨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주식의 양도) ① 본 계약 일방당사자가 합작투자회사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양도 기타 처분하고자 할 때, 그 당사자(매도당사자)는 매도가격 및 내용과 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먼저 타방당사자(우선 매수당사자)에게 청약하여야 한다. 우선 매수당사자는 일인이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지명인)을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 우선 매수당사자를 대신하여 청약된 주식을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만일 우선 매수당사자 또는 그 지명인이 통지일로부터 90일(승낙기간)내에 그 청약을 승낙하지 않으면, 그 후 매도당사자는 승낙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자유매각기간) 이내에 제4항의 조건에 따라 그 청약한 주식 전부를 자유로이 매각할 수 있다.

2. 단, 매도 당사자는 그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매수당사자 또는 그 지명인에게 청약했던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또는 매수당사자 및 그 지명인에게 청약했던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수 없다.

3. 만약 청약된 주식이 본 계약에 정해진 조건으로 자유매각기간 내에 전부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기타 처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잔여주식은 마치 매매청약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본 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본 계약 제1조의 언급한 승낙기간 또는 자유매각기간은 당해 주식의 매매·양도 및 기타 처분에 필요한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또는 공식적으로 승인 거절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된다. 단, 그와 같은 승낙기간 또는 자유매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③ 만일 본 계약 일방당사자가 그 주식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3자(지명인을 포함)에게 매각, 양도 및 기타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매도당사자 또는 지명인을 지정한



우선 매수당사자는 그 주식을 취득하는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취득의 선행조건으로서 본 계약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매도당사자와 똑같은 범위로 본 계약의 모든 규정에 구속을 받겠다는 데 합의하는 약정서를 타방당사자 및 합작투자회사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각 당사자는 승낙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본 조에 따라 청약된 주식이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기타 처분되는 경우 그 자연인 또는 법인(지명인을 포함)의 인적사항을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의한다. 각 당사자는 그 제3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합작투자 회사 주식의 매매, 양도 또는 기타의 처분을 거절할 권리를 보유한다.

1. 그 제3자가 자기의 신용으로 합작투자회사가 그 당시 부담하고 있는 보증부채의 할당된 비율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을 가지지 못한 때

2. 그 제3자가 본 계약상 예정된 합작투자회사의 사업과 경합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악영향을 미칠 사업 또는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⑤ 어느 당사자도 타방당사자로부터 입질 및 저당권의 설정, 기타 이용에 대해 서면으로 승낙을 받지 않는 한 합작투자회사의 주식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주식을 강제적으로 이전 또는 양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기타 다른 목적에 그 주식을 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

⑥ 본 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그 주식을 한국인에게 매각, 양도 또는 처분하며 한국법률상 합작투자회사나 “갑”이 받을 수 있는 조세혜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⑦ 주식의 매매, 양도 또는 기타 처분이 어떤 이유로든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당초의 주식 보유 비율의 변경을 초래할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성실히 협의하여 본 계약의 관련 조항 및 합작투자회사의 정관을 수정한다.

제7조(신주인수권) 합작투자회사의 주주들은 합작투자회사의 모든 신주발행에 대하여 그 주식소유 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제8조(주주총회 및 결의) ① 주주총회의 소집·일시·장소 및 의안은 정관과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의 요건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 합작투자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내에 개최된다.

③ 합작투자회사의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의 요건에 따라 수시로 개최될 수 있다.

④ 모든 주주총회는 공동대표이사 1인이 주재하며,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지명된 가당사자의 공동대표이사는 회의마다 교대하여 의장이 된다. 주주총회의 모든 행위와 결의는, 한국의 법률에 의하여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9조(이사회) ① “갑”과 “을”은 합작투자회사의 이사회가 최소한 ○○명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바의 그 이상의 짝수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그 의결권을 행사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단, 어느 경우에도 각 당사자가 선임하는 이사의 수는 같아야 한다.

② 합작투자회사의 이어나 감사의 자리가 어떤 이유로든 공석이 된 경우에 당사자들은 공석이 된 당해 이어나 감사를 원래 지명하였던 당사자가 지명하는 자를 이어나 감사로 선임되도록 그들의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한다.

③ 합작투자회사는 2인의 공동대표이사를 둔다. 그중 한 명은 “갑”측이 지명한 이사 중에서 선출되어 사장이 되고, 다른 한 명은 “을”측이 지명한 이사 중에서 선출되어 수석부사장이 된다. 2인의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으로 합작투자회사를 대표한다.

④ 이사회의 정기회의는 매 결사기의 정기주주총회 직후에 개최된다. 임시 이사회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나 기타 다른 이사 3인의 요구가 있으면, 공동대표이사 1인이 정관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통지를 하고 소집한다. 모든 이사회 회의는 공동대표이사 1인이 주재하며, 각 당사자가 지명한 공동대표이사는 회의마다 교대하여 의장이 된다.

⑤ 법률이나 정관 또는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사회는 모든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⑥ 합작투자회사의 독립공인회계사와 법률고문은 이사회는 결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⑦ 합작투자회사는 이사회는 결의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계약사와 계약 또는 기타 협정의 체결. 단, 본 계약에서 특히 예정되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2. 특허된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상의 노하우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나 실시권의 허여를 포함하는 일체의 라이선스 계약 또는 기타 협정의 체결

3. 합작투자회사가 기술적인 훈련·조언 및 기타 지원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문 또는 기타 용역 계약의 체결

4. 부동산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5. \_\_\_\_\_원을 초과하는 자금의 차입

6. 대부 또는 보증

7. 합작투자회사의 연차 예산의 채택

8. 신주발행

9. 중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10. 합작투자회사의 기본 정책을 내포하는 제반 결정

제10조(교착상태의 해결) ① 당사자들은 합작투자회사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분쟁과 이견을 상호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② 만일 합작투자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특정문제에 대해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에 의해 합작투자가 교착상태에 빠졌음을 통지할 수 있고, 본 통지 후 90일 내에 양당사자가 교착상태가 해결되었음을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주주들은 “갑”측에서 지명한 1인과 “을”측에서 지명한 1인, 총 2인을 감사로 선출하며, 감사는 법률상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2조(임원과 피용자에 관한 사항) ① 합작투자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주주가 승인한 것 이외에는 합작투자회사로부터 어떤 보수도 받을 수 없다.

② 원칙적으로 이사와 감사는 경영진으로 재직하는 경우에만 (임원)보수를 받는다. 단, 비상근 이사와 감사는 그들의 의무를 수행키 위해 필요한 범위의 상당한 여비 기타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없다.

③ 합작투자회사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월급, 상여금, 기타 급여는 매년 합작투자회사 이사회와 협의하여 당사들이 검토하며 그 당시의 한국의 일반 관행을 고려한다.

④ 양당사자 사이에 M&A의 전략팀을 구성하는 근로자는 M&A 업무 취급 중에 알게 된 양 당사자의 중요한 경영 및 기술상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회사운영 기본방침) ① 당사자들은 본 조 아래에 규정된 회사 운영방침에 합의한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동안 그러한 방침이 이행되도록 각자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또 각자의 선임이사 기타 대표로 하여금 이를 이행케 하도록 하는데 합의한다.

② 합작투자회사의 회계장부와 기록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회계원칙에 따라 유지되며 합작투자회사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중 매 결산기 말에 제9조 제6항에 따라 선임된 독립된 공인회계사가 합작투자회사의 장부와 기록을 감사하도록 하는데 합의한다(연차감사). 그 회계사는 매년 각 당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회계원칙에 따라 영어와 한국어로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합작투자회사의 결산기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단, 합작투자회사의 첫 결산기는 설립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4조(자금조달) ① 합작투자회사는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필요한 운용자금을 상업적 차입에 의하여 조달한다. 대부자가 대부조건으로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합작투자회사에 갖는 각 지분을 따라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합작투자회사가 차입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수시로 상호 합의하는 금액까지 각 지분율에 따라 합작투자회사에 필요 자금을(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부하기로 합의한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당사자의 합작투자회사에 대한 대부는 타방당사자가 한 대부와 기간, 이자, 상환, 기타 조건 등에 관하여 동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들이 건전하고 신중한 영업 관행에 비추어 제4조에 따라 납입될 자본 외에 추가자본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 추가 자본은 “갑”과 “을”은 필요한 정부의 승인을 거쳐 합작투자회사에 갖는 지분율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가 자본은 한국 법률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납입될 수 있다.

제15조(사업과 운영) ① 당사자들은 합의하여 합작투자회사의 경영계획을 즉시 수립하도록 협력한다. 이 경영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합작투자회사의 사업범위, 임원, 조직·경영조건, 마케팅계획, 합작투자회사의 운영방식, 기타 양당사자가 합의하는 사항

제16조(정보의 소유권 라이선스 및 기밀유지) ① “갑”과 “을”은 각각 자기의 전속적 기술, 정보 및 자료의 소유권을 보유하며 라이선스 또는 기타 상호합의 하는 방법으로 그 기술, 정보 및 자료를 합작투자회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당사자들은 본 합작투자계획을 통하여 합작투자회사로부터 또는 타방당사자로부터 얻은 기밀적 성질의 기술, 재정 및 마케팅 정보를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거나 또는 타방 당사자나 합작투자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한다. 이를 위해 기밀정보의 모든 기록, 사본, 재생, 복사 및 번역에는 비밀성을 가지는 것으로 명백히 표시하여 허용되지 않은 사용이나 복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각자의 중요한 경영상·기술상의 정보를 제3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시에는(예: 투자 유치, 대외 홍보 등) 사전에 경영회의를 개최하여 공개할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기로 한다.

④ 만일 상대방의 중요한 기술개발 사항 등에 관하여 알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관할 지적 재산권 관리부서에 요청하기로 한다.

제17조(발효일 및 정부의 승인) 본 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정부의 승인을 요하는 본 계약상의 규정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계약기간 및 해지) ① 본 계약은 발효일로부터 시작하여 본 계약상 조항에 의하여 해지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 ②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지될 수 있다.
1.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계약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일방당사자에 의하여)
  2.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상 어느 의무에 중대한 위반을 하고 그 의무 위반이 그 치유를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타방당사자에 의하여)
  3.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 제21조에 정의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어느 의무를 연속된 90일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타방당사자에 의하여)
  4. 일방당사자 또는 그 채권자 및 기타 자격 있는 자가 그 당사자의 청산, 파산, 회사 정리, 채권자와의 강제화해, 해산 등을 신청한 경우 또는 일방당사자가 변제기에 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변제기에(선의로 다투는 경우는 제외) 명시적, 묵시적으로 그 채무의 지불을 정지한 경우 또는 일방당사자의 채권자가 그의 경영을 인수하거나 관계금융기관이 어음교환소의 거래를 중지시킨 경우(타방당사자에 의하여)
- ③ 본 계약의 해지는 서면 포기가 없는 한 해지일 현재 이미 발행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어떠한 사유로든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일방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요청이 있으면 양 당사자들은 합작투자회사의 자산과 주식의 종국적 처분에 관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신의성실에 좇아 회합하고 협상한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위의 통지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당사자는(서면 통지에 의하여) 합작투자회사의 청산절차를 밟는데 타방당사자가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불포기 및 기타 구제) ①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상 어느 조항의 엄격한 적시의 이행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포기나 금반언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한 경우의 포기나 금반언은 사후의 유사하거나 상이한 성격의 계약위반에 관한 포기나 금반언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의 어느 조항도 일방당사자가 그의 권리를 법에 규정된 모든 유효한 구제수단에 의하여 주장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0조(불능조건) 본 계약상의 어느 조항 또는 조건이 어떠한 이유로든 어떤 점에 있어서 불능·불법·무효인 경우 본 계약은 그러한 조항 또는 조건이 처음부터 본 계약 내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되고 간주된다.

제21조(불가항력) ①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어떤 의무를 오로지 천재지변, 정부 조치, 폭동, 전쟁, 파업, 운송사고 기타 합리적 통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유(불가

항력)만으로 인해 불이행 또는 지체한 경우, 이를 본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위의 당사자는 그 불가항력을 야기시키지 않았어야 하고 그러한 불가항력을 회피하거나 그 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어야 하며 계속하여 본 계약의 조건을 가능한 한 충분히 이행하도록 그 능력범위내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고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항력에 빠진 당사자는 그 불가항력이 발생한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상황 하에서 합리적이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그 원인을 제거 또는 치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2조(대리관계 부인) 본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어떠한 대리관계도 창설하지 아니한다. “갑”과 “을”은 다른 일방을 대신하여 또는 타방의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및 기타 어떤 계약도 체결하거나 인수 또는 창설할 권한이 없다.

제23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4조(양도성) 본 계약 및 본 계약하의 어떠한 권리도 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양도될 수 없다.

제25조(적용법규)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제26조(완전합의) ①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주제에 관해 당사자들간의 이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 모든 진술·약정 기타 합의에 우선하며, 본 계약에서 예기되어 있는 각종 합의서 및 기타 서류와 더불어, 당사자들간의 관계의 내용에 대해 완전합의를 구성한다.

② 본 계약상의 변경·개정 기타 수정은 양당사로부터 수권 받은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소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어야 비로소 효력이 있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두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한 후 각 한통씩 보관한다.

2000년 00월 00일

“갑”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성 명 : \_\_\_\_\_ (직인)

“을”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성 명 : \_\_\_\_\_ (직인)

## 직무발명보상규정

[2000년 00월 00일 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00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종업원이 창작한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발명”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발명
2. 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의 고안

②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이하 “종업원”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③ “자유발명”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2.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회사가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3.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

④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등을 말한다.

⑤ “종업원”이란 회사와 민법상 고용계약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뿐만 아니라, 노무를 사실상 회사에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⑥ “출원유보”라 함은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⑦ “특허관리전담부서”라 함은 사용자등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획·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 ① 종업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단, 제5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및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6조 제2항에 의해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종업원이 종업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는 종업원이 갖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해당지분을 회사가 승계한다. 단,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제2장 발명의 신고 및 승계여부의 통지

제4조(발명의 신고) ①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부서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특허관리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2인 이상의 종업원이 공동으로 한 발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양도증[별지 제2호 서식]
3. 발명의 내용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
4. 선행기술 조사서[별지 제4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즉시 그 발명신고서에 수령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 후 사본을 발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 및 승계여부의 통지) ①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별표1]의 발명평가기준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③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승계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4월 이내에 그 발명을 한 종업원과 소속 부서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별지 제5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승계시점 등) ①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발명을 한 종업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7조(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전담부서에 문서([별지 제6호 서식])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한 발명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그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과 소속 부서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별지 제7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발명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유발명의 양도) ① 발명자는 제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발명이라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에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발명을 승계한 경우 본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 제3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9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약간명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임직원 및 소속부서장, 종업원 대표 중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
- ②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
- ③ 직무발명의 출원(해외출원 포함), 등록 여부
- ④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용여부
- ⑤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여부
- ⑥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실시허여·기술이전 또는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 ⑦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양수 여부
- ⑧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지급기준·산정방식·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 ⑨ 본 규정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⑩ 기타 대표이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간사는 회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장 출원 및 비용부담

제13조(출원 등) ① 회사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회사 명의로 지체 없이 특허출원을 하며,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그 사실을 발명자와 소속 부서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별지 제8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발명자와 소속 부서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별지 제8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비용부담) ①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단, 회사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으로 당해 과제 관련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과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무에 관해서는 그 발명에 대한 지분 및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제5장 보 상

제15조(보상금의 지급) ①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1. 출원보상금 : 직무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 2. 등록보상금 : 직무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 3. 실시·처분보상금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직접실시, 양도 또는 실시하여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 4. 출원유보 보상금 :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및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취하·포기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보상금에 상당하는 승진·승급·연수 등의 비금전적 보상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산정방식·지급시기 등의 세부사항은 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6조(공동발명자의 보상) 제15조 규정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 그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신고자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고서에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제17조(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상) ①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단, 특허법 제33조제1항의 본문규정에 의한 이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장 보 칙

제19조(비밀유지의무) ①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회사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회사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이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적용된다.

제20조(출원의 제한 등) 발명자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손해배상) 발명자가 제4조 제1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협력의무) 발명자는 출원·심사·심판·소송·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단, 회사를 상대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퇴직 등 후의 취급) 종업원이 퇴직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발명이 직무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급은 본 규정에 의한다.

제24조(준용 및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권리 및 이외의 신지식재산권에 광범위하여 준용한다.

② 종업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종업원의 신고가 있는 직무 발명에 대해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권리로 본다.



[별지 제2호 서식]

<b>양도증(지분표시)</b>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지분율
양도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기타					
양수인	성명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소				
<p>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식회사 직무발명규정 제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 양도합니다.</p> <p>200   년    월    일</p> <p>○ ○ ○ ○ 주식회사 귀중</p>					



[별지 제3호 서식]

발명설명서(명세서) - 1	
1. 발명의 명칭 (한글, 영문)	
2. 도면의 간단 설명	(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3. 발명 상세 설명	<p>[발명의 목적]</p> <p>3.1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p> <p>3.2 그 분야 종래기술의 설명 및 문제점</p> <p>3.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발명의 목적)</p>

[별지 제3호 서식]

<b>발명설명서(명세서) - 2</b>	
3. 발명 상세 설명	<p>[발명의 구성]</p> <p>3.4 발명의 구성 및 작용</p> <p style="padding-left: 20px;">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p> <p style="padding-left: 20px;">나) 기능 및 작용</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실시예</p>
	<p>[발명의 효과]</p>
4. 특허 청구범위	<p>4.1 청구항1</p> <p>4.2 청구항2</p> <p>4.3 청구항3</p>

[별지 제4호 서식]

<b>선행기술 조사서</b>			
제출자(발명자)		접수번호	
발명의 명칭		제출일자	
<b>1. 선행기술과의 대비</b>			
기존특허 (제목, 특허번호, 출원일자)	본 발명 대비 신규성 (어떤 점이 새로운가?)	본 발명 대비 진보성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가?)	
<b>2. 관련자료(참고문헌, 학회지 등)</b>			
문헌명, 저자, 페이지 등	기술 요약	참고문헌과 비교시 본발명의 특징	

[별지 제5호 서식]

통지일자	
수령자	직위 :
	성명 : (인)

심사결과 통지서	
문서(접수)번호	
수신(발명)자	
발명의 명칭	
제 목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통지
<p>○○○○주식회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5조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p>	
<b>결 정 사 항</b>	
1. 직무발명 여부	
2. 회사의 승계 여부	
3. 특허성의 등급결정	
4. 국내·외 출원여부	
5. 출원시 심사청구여부	
6. 기타	
<p>200   년    월    일</p> <p>○○○○ 주식회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인)</p> <p>○○○○ 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인)</p>	

[별지 제6호 서식]

<b>이의신청서</b>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주 소		
접수일자		20 . . . .	접수번호
발명의 명칭			
<p>[신청이유]</p> <p>1. 제5조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p> <p>2. 제5조제1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p>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 본인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7조에 의거 20 년 월 일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오니 재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 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b></p>			
첨 부	이의신청에 대한 증거서류		

[별지 제7호 서식]

<b>이의신청결정 통지서</b>	
문서(접수)번호	
수 신 자	
발명의 명칭	
제 목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이의신청결과 통지
<p>○○○○주식회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7조에 따라 귀하의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p>	
<b>결정 사항</b>	
1. 신청이유(요약)	
2. 결정내용	
<p>200   년    월    일</p> <p>○○○○ 주식회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인)</p> <p>○○○○ 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인)</p>	

[별지 제8호 서식]

<b>출원통지서</b>			
문서(접수)번호			
수 신			
발명의 명칭			
발 명 자			
○○○○주식회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13조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출원여부 등을 통지합니다.			
권리내용			
출원여부			
출원일자		출원번호	
미출원 이유			
200 년 월 일  ○○○○ 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인)			
첨 부	출원명세서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세칙

[2000년 00월 00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0000주식회사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원보상금) 출원보상금의 액수는 금 \_\_\_\_\_ 원으로 한다. 단, [별표2]에 따라 비금전적보상을 고려할 수 있다.

제3조(등록보상금) 등록보상금의 액수는 금 \_\_\_\_\_ 원으로 한다. 단, [별표2]에 따라 비금전적보상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조(실시·처분보상금) ①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처분보상금은 [별표2]에 의해 산정된 공헌이익액 또는 처분수입금의 00%를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② 종업원이 자유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한 경우, 실시·처분보상금은 [별표2]에 의해 산정된 공헌이익액 또는 처분수입금의 00%를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③ 실시·처분보상금은 당해 발명의 실시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는 동안 계속 지급하되, 매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출원유보보상금) 출원유보보상금의 액수는 금 \_\_\_\_\_ 원으로 한다. 단, [별표2]에 따라 비금전적보상을 고려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의 조정) 제2조 내지 제5조의 보상금은 직무발명심의 위원회가 발명의 경위와 내용, 발명자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실시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세칙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 발명평가기준

&lt;평가기준표(예시)&gt;

평가요소	평 가 기 준			
기술성(20)	낮음(5)	보통(10)	높음(15)	매우 높음(20)
실시 가능성(20)	실시가능성 낮음(5)	부분적인 보완 후 실시가능(10)	즉시 실시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시설 필요(15)	즉시 실시가능(20)
독창성(20)	직무상 당연히 착상가능(5)	문헌 타자료에 의해 착상가능(10)	다른 발명을 독창적으로 계량·고안(15)	극히 독창적인 고도의 기술(20)
경제적 가치(20)	연간 순수익 1,000만원 미만(5)	연간 순수익 5,000만원 미만(10)	연간 순수익 1억원 미만(15)	연간 순수익 1억원 이상(20)
독점성(10)	회사 외부의 제3자 발명을 이용해야만 실시가능(이용발명)(3)	공유권리자 및 무상의 실시권자 존재(6)	완전한 독점 가능(10)	
기술의 수명(10)	1년 미만(3)	5년 미만(6)	10년 미만(8)	10년 이상(10)

※ [평가결과] ○○점 이상: 직무발명 승계 및 국내출원, ○○점 이상: 해외 출원

&lt;해 설&gt;

- ◆ 신고된 직무발명에 대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발명 평가기준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
- ◆ 상기 발명평가기준이 정당한 보상기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정 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회사와 종업원등간에 충분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별표2]

## 보상금 지급기준

### 1. 출원·등록·출원유보 보상금

정 액 법
-------

출원 보상금	등록 보상금	출원유보 보상금
· 특 허 : 〇〇만원 · 실용신안 : 〇〇만원 · 디자인 : 〇〇만원  상기 금전적 보상 또는 승진평가점수반영 중 택 1	· 특 허 : 〇〇만원 · 실용신안 : 〇〇만원 · 디자인 : 〇〇만원  상기 금전적 보상 또는 승진평가점수반영 중 택 1	· 특 허 : 〇〇만원 · 실용신안 : 〇〇만원 · 디자인 : 〇〇만원  ※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 되었다라면 종업원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고려

평 가 점 수 법
-----------

등 급	평가점수	특 허	실 용	디자인
1등급	80~100	70만원	50만원	
2등급	70~79	60만원		
3등급	60~69	50만원	40만원	30만원
4등급	50~59	40만원	30만원	20만원
5등급	40~49	30만원	20만원	10만원
6등급	40미만	20만원	10만원	5만원

## &lt;해 설&gt;

- ◆ [별표1]의 보상기준에 의해 회사가 승계하기로 결정한 발명에 대해 출원, 등록, 출원유보, 실시·처분시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의 기준을 미리 마련하도록 함
- ◆ 보상금지급액은 정액법에 따라 매 발명마다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별표1]의 발명평가기준에 의해 산출된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평가점수법을 따를 수도 있음
- ◆ 보상금 지급기준 역시 발명평가기준과 동일하게 개정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이라면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금전적 보상 외의 기타 보상형태를 고려할 수 있음

연구원이 선호하는 보상제도
----------------

- |   |   |
|---|---|
| ① Fellow제 시스템(21.0%)<br>③ 개인자율과제 수행기회 부여(11.7%)<br>⑤ Visiting Scholar제도(8.4%)<br>⑦ 시장가치를 반영한 보상지급(6.7%)<br>⑨ Post Doc. 지원(5.8%)<br>⑪ 기타(7.2%) (* 굵은 항목이 비금전적 보상, A연구소 조사결과) | ② 개인별 경력관리 및 개발(12.8%)<br>④ 특별보너스(8.6%)<br>⑥ 안식년 제도(7.0%)<br>⑧ 학위과정 지원(6.1%)<br>⑩ 희망직무선택권(4.7%) |
|---|---|

2. 실시 및 처분보상금

슬라이드 법

◆ 발명에 의해 얻어지거나 또는 얻어질 모든 이익을 기준으로 일정한 산출 방법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슬라이드법이라 함

<CASE 1>

	항 목	세 부 항 목	산 출 기 준
실시 보상금	투 입 비	경상적지출	당해 발명을 위해 연구기관동안 사용된 경상 연구 개발비(인건비, 국내·외 여비, 연구활동비, 용역 및 위탁연구비, 제경비 등)
		자본적지출	당해 발명을 위해 연구기관동안 구입 사용한 연구 장비(구매, 제작 등)등에 투입된 총투자비용
	수 익 액	기 술 료	발명 권으로 업체등과 기술이전 계약으로 체결하여 받은 기술료 전액
		경비절감 또는 수익증대 효과	※제시된 효과를 기초로 하되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견 - 경비절감: 사업부서 확인 인건비등의 경비절감 및 구매대체효과에 대한 적절한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입증자료 제출 - 수익증대: 사업부서 확인영업수익을 객관적으로 산출 가능하게 작성
	공 현 이 익 액	수익액 - 투입비	
처 분 보 상 금	처분수입금 = 기술료 - 투입비		

※ 실시보상금은 공현이익액의 〇〇%를 지급한다.

※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의 〇〇%를 지급한다.

## &lt;CASE 2&gt;

순 이 익	보 상 금 산 정
1,000만원 이하	기준금액 × 30%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기준금액 × 20% + 100만원
5,000만원 초과	기준금액 × 10% + 200만원

※ ① 순 이 익 = (총판매량×판매단가) - (제조원가+영업경비)

② 기준금액 = 순이익 × 이용률(당해 제품에서 특허가 이용되는 비율)

## &lt;CASE 3&gt;

실시료 수입액 또는 양도금액	보 상 금 산 정
1,000만원 이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30%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 × 20% + 300만원
5,000만원 초과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5,000만원) × 10% + 1,100만원

## 경 고 장

발신번호 :

수 신 : ○○○○ 주식회사

소재지 :

대표이사 :

제 목 : 특허권 침해사실 통보와 침해중지 요청 및 이에 대한 답변 요구

1. 귀사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_\_\_\_\_본인은 “\_\_\_\_\_”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20○○년 ○○월 ○○일자로 특허출원을 하여 20○○년 ○○월 ○○일자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등록사실은 첨부1 특허등록원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기 이권 등록특허(등록번호10-○○○○○○○○) ○○○○의 특허 청구범위 제1항은 “○○○○ 더 크게 형성되는 것(이하 “자전거”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재사실은 첨부2 등록특허공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 위 사실을 기초로 하여 본인은 귀사에서 본인의 특허권과 동일한 자전거(첨부3)를 ○○○○으로부터 구입을 하여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및 본인의 특허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와 같이 경고장을 보내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본인의 특허권에 대한 귀사의 침해행위에 대해 곧바로 법에 따른 자위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귀사에서 본인의 특허품인 자전거를 사용하여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은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알리고 귀사가 스스로 이와 같은 침해행위를 중지함과 동시에 본인의 요구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4. 본인의 특허권에 해당하는 물품인 자전거를 제조 및 판매하는 귀사의 실시행위는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인 i) 특허발명의 실시 ii) 보호범위 내의 실시 iii) 업으로 실시 iv) 정당한 권원이 없는 실시에 해당하므로 현재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귀사에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사상 구제수단으로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인은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귀사의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제조 및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 구제수단으로 특허법 제225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귀사의 계속적인 침해행위는 고의가 입증되므로 침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따라서 본인은 귀사를 고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허법 제231조에 몰수규정에 따라 귀사의 침해품을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6. 따라서 본인의 특허권의 침해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적인 침해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침해를 할 경우 상기 민사적 구제 및 형사적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며 이하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 (1) 이 경고장을 받는 즉시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제작 및 판매 등 일체의 실시행위를 즉각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귀사가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공급한 업체(주소, 연락처, 대표자명 포함), 공급량, 공급기간 및 공급단가 일체의 정보를 문서화하여 본인에게 20○○년 ○○월 ○○일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으로서 금일 현재 귀하가 보유하고 있거나 시중에 배포되어 있는 물품을 20○○년 ○○월 ○○일까지 모두 수거하여 본인의

입회하에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차후로는 본인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절대로 자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2000년 00월 00일까지 본인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귀사의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본인의 등록특허를 실시함에 따른 손해배상액(또는 합의금)을 본인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자료 -

- 첨부 1. 특허등록원부(등록번호 10-00000000) 사본 1부  
첨부 2. 등록특허공보 사본 1부  
첨부 3. 귀사가 구입하여 사용하는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전거의 사진. 끝.

2000년 00월 00일

발 신 : 0000 주식회사  
소재지 :



## 회 신 문

발신번호 :

수 신 : ○○○○ 주식회사

소 재 지 :

대표이사 :

제 목 :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경고에 대한 회신의 건

1. 귀사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귀하가 20○○년 ○○월 ○○일 발송하신 경고서, 이에 첨부된 특허등록원부 사본 및 특허기술내용 요약문을 검토하고 난 후 이건 문서를 귀하께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3. 귀하는 상기 경고장을 통해,

『따라서, 20○○년 ○○월 ○○일까지 귀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귀사의 특허침해에 대하여 사과문을 정식으로 보내 주시고, 둘째,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이나 솔루션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전시,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 수입하는 행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침해된 특허물품의 대여, 제공, 배포하는 행위, 이와 같은 특허 침해된 물품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위 등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위 같은 기간 내에 특허를 침해하여 생산된 물건이나 매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회계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실적, 하도급 내역서 등 자료를 당사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통보하였습니다.

4. 당사는 당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귀하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당사가 실시하는 기술은 귀하가 송부한 특허발명1 내지 3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당사의 실시 기술은 송부된 특허발명1 내지 3의 청구항들에 기재된 일련의 단계들 중 핵심적인 단계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 의해서 특허발명1 내지 3에 설정된 귀하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5. 또한, 당소에서는 특허발명1 내지 3에 대해 출원일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

에 대해 검색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특허발명1 내지 3과 동일성이 있거나, 당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한 선행기술을 다수 검색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상기 특허발명1 내지 3에 기재된 발명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1 내지 3은 당사가 현재 확보한 그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는 기술과 동일하거나, 공지된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도 특허무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대법원 81후56 판결(전원합의체) 등을 참조해 볼 때, 당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특허발명1 내지 3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또는 특허발명1 내지 3과 유사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발명1 내지 3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특허발명1 내지 3이 그 출원일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는 기술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라고 판시한 대법원 99후710 판례 등을 참조해 볼 때, 당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술은 특허발명1 내지 3과 관계없이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업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허발명1 내지 3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1 내지 3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6. 또한, 위와 같이 특허발명1 내지 3은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한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등을 참조해 볼 때, 무효사유가 명백한 귀하의 특허권에 기한 경고장 발송과 같은 권리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7. 설령, 당사가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1 내지 3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가 상기 특허발명1 내지 3의 특허권자와 해당 기술에 대해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상술한 논의와 전혀 관계없이 특허발명1 내지 3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당사에게 전용실시권의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허권자와 실시 계약을 맺어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당사에게 부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됩니다.

8.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귀하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으며, 귀하가 요청한 사과문, 회계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실적, 하도급 내역서 등 자료 제출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당사에 대한 요청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당사는 송부된 특허발명1 내지 3의 무효 사유를 이유로 특허발명1 내지 3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아울러, 당사가 귀하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이처럼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명시적인 사죄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당사가 귀하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당사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당사는 귀하가 악의적으로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수도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은 당사가 취할 수 있는 제반사항 중 최소한의 것으로서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동종업자간 불필요한 다툼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 ○○○○ 주식회사

소재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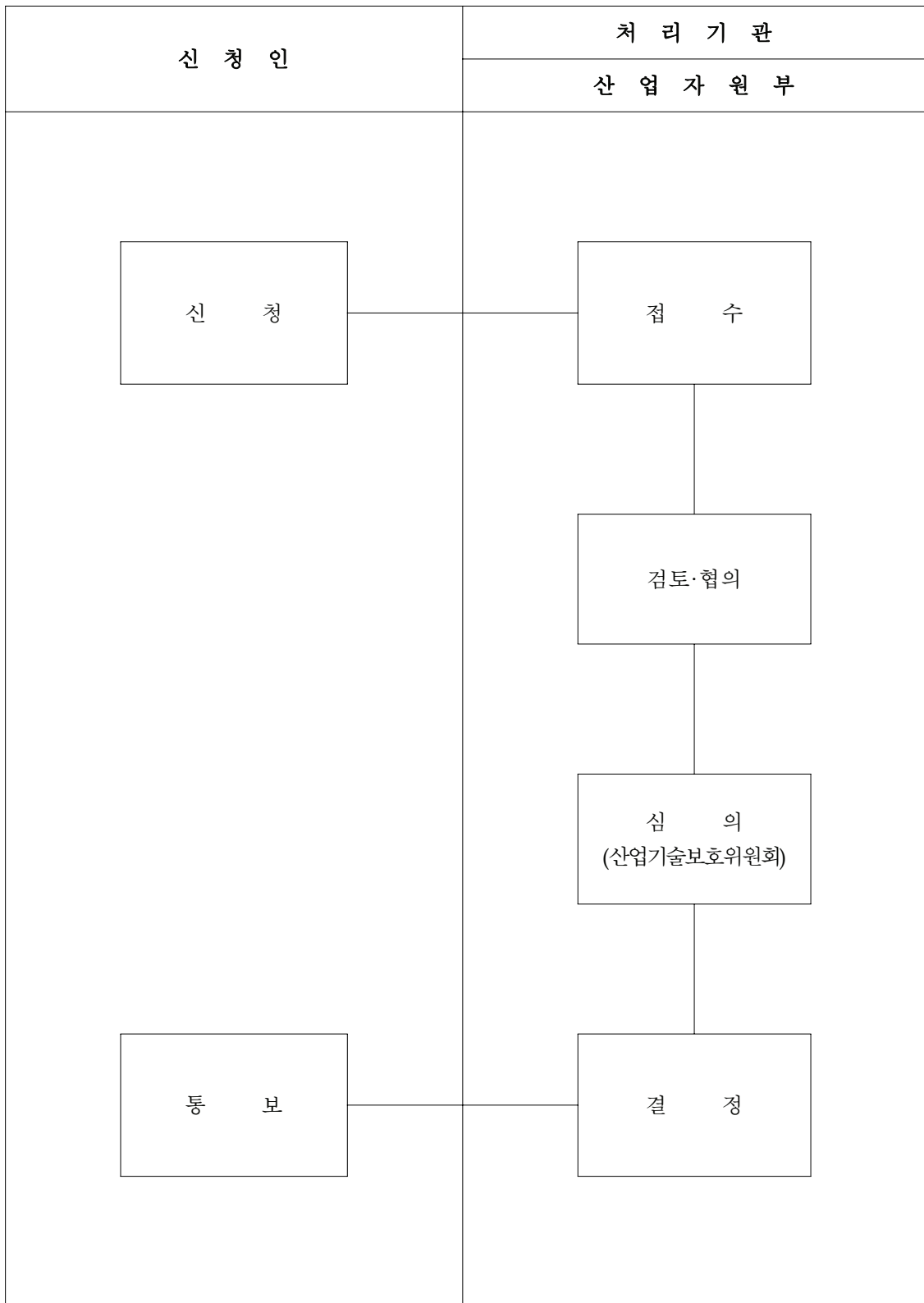
지식재산권부 ○○○ ⇒ (대표이사 이름을 피할 것)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① 상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 년 월 일
	⑤ 주 소	
	⑥ 전 화 번 호	
⑦ 기 술 명 칭		
⑧ 기 술 형 태		
⑨ 수 출 사 유	<input type="checkbox"/> 매각 ( ) <input type="checkbox"/> 이전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⑩ 수 출 예 정 일		
<p>「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산업자원부장관 귀하</p>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6.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없 음
비 고 : ⑨란은 해당하는 수출 사유에 표시를 하고 그 사유의 세부 내용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① 상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 년 월 일
	⑤ 주 소	
	⑥ 전 화 번 호	
⑦ 기 술 명 칭		
⑧ 기 술 형 태		
⑨ 수 출 사 유	<input type="checkbox"/> 매각 ( ) <input type="checkbox"/> 이전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⑩ 수 출 예 정 일		
<p>「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산업자원부장관 귀하</p>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없 음
<p>비 고 : ⑨란은 해당하는 수출 사유에 표시를 하고 그 사유의 세부 내용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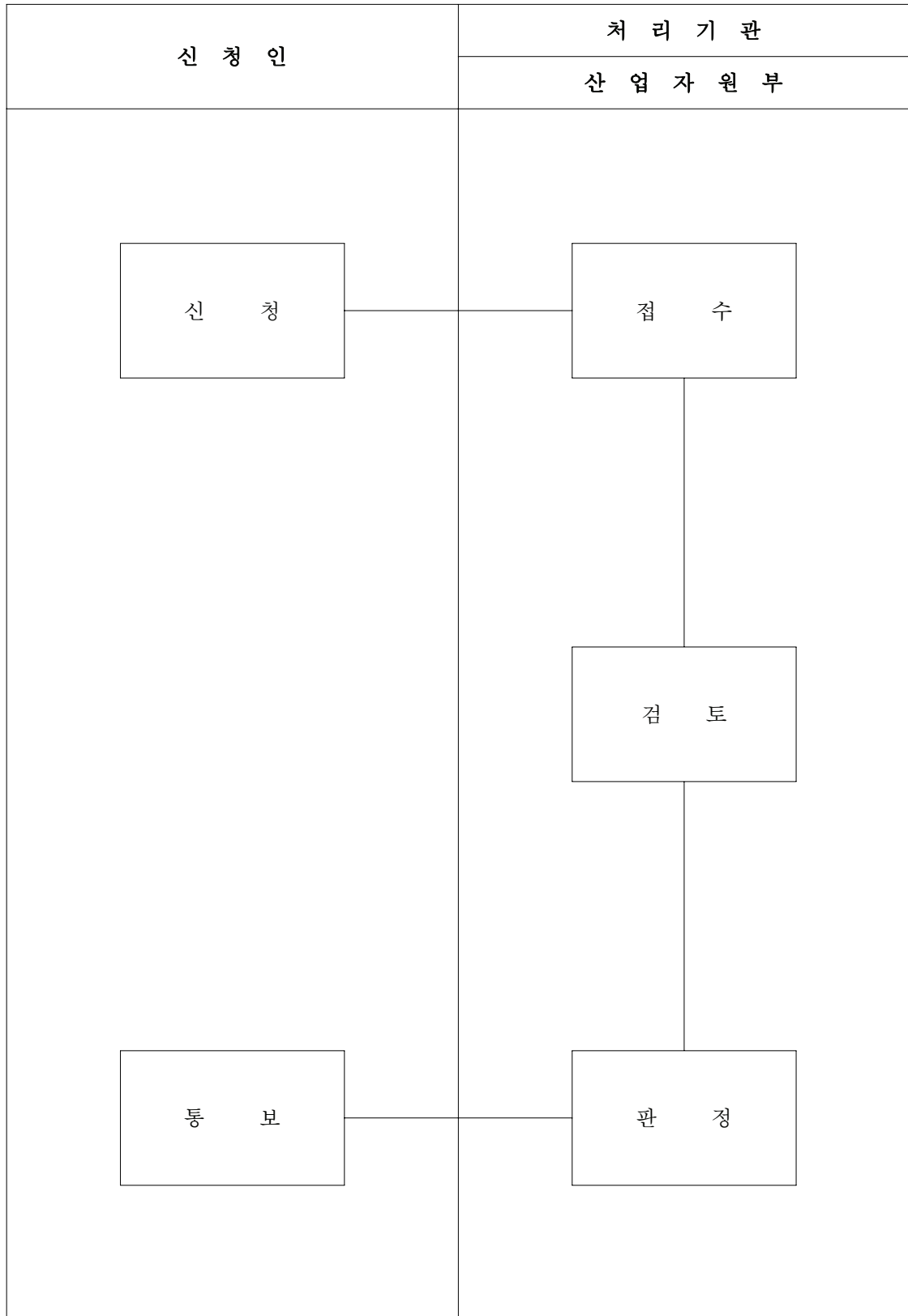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상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 년 월 일
	⑤ 주 소	
	⑥ 전 화 번 호	
⑦ 기 술 명 칭		
⑧ 기 술 형 태		
⑨ 수 출 사 유	<input type="checkbox"/> 매각 ( ) <input type="checkbox"/> 이전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⑩ 수 출 예 정 일		
<p>「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산업자원부장관 귀하</p>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2.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4.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없 음
비 고 : ⑨란은 해당하는 수출 사유에 표시를 하고 그 사유의 세부 내용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대응매뉴얼(별책부록)

---

발행일 2007년 12월 18일 발행

편집 및 발행 중소기업청(☎042-481-4403, 450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2-3787-0505, 0502)

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72)

---

※ 사전 승인 없이 본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